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46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6年 11月 27日(水) 10時07分

場 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會議場

監査日程 (第3次 監査活動)

1. 監査實施宣言(委員長)

3. 所管別審査

가. 地 籍 課 所管	_____	5 面
나. 福 祉 課 所管	_____	9 面
다. 環 境 保 護 課 所管	_____	45 面
라. 保 健 醫 療 院 所管	_____	67 面

(10時07分 監査實施)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적과, 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地籍課 所管~~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
제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지적과장 남 대 현

(지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
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중개했을때 수수료는 얼마를
받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시지가의 몇%를 받는지,

○ 地籍課長 南大鉉 : 부동산중개업 수
수료는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매를 할때에 500만원미만일
때는 수수료 요율이 10000분의30, 담세
액은 35,00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실수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서면으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相薰 委員 :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4쪽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이 있
습니다. 건축물대장이 군에서 이관은
언제 되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을 7월 1일날 이 관이 되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아직까지도 면에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때 제대로 제도가 된 사항입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군에서도 발급하고 양쪽 어디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金斗經 委員 : 양쪽다 가능한데, 예를들어 모르고 객지에 갔다가 이것은 면에가야 한다 해가지고 군에서 발급할 것도 군에왔다가 모르고 면에 가는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홍보를 더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3쪽을 보시면 지적측량대행법인관리감독 실적및 처리현황은 자료가 너무 개괄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

데 관내에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몇개나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1개소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지적공사 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일반 측량사무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토목분야면 토목,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 李洙現 委員 : 측량사무소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도시과에서 합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과조준의 1km거리 측정가능, 또 광과측거기 3km거리 측정가능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료에 나온대로 1대씩밖에 없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1대씩밖에

없습니다.

○ 李洙現 委員 : '85년도 10월 5일날 취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장비상태가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양호합니다.

○ 李洙現 委員 : 광파조준의는 우리 지적과에서 한달에 몇일정도 사용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측량검사 나갈때 수시로 하기때문에 일주일에 3~4일정도 나갑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광파측거기 같은경우에 한달에 얼마나 사용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광파측거기는 경 지정리지구나 도시계획도 확장측량할때 1년에 4~5회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광파측거기 같은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충분히 지역개발과라던가 이런곳하고 같이 사용할수가 있겠네요?

○ 地籍課長 南大鉉 :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 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각 면별로 있는데 전에는

정원제인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폐지가 되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정원제가 폐지되면 몇개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자격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됩니다.

○ 劉燉文 委員 :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을짓기 위해서 측량을 신청하면 인접 땅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 地籍課長 南大鉉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인접토지의 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받는 법조항이 및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을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적법시행령 제45조 2항 규정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경계복원측량사유에 입회한 신청서의 인접토지소유자의 측량참려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행법인에게 신청토록하며 이경우 인접토지소유자의 거부 또는 부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
첨부가 불가능할때 그 사유를 첨부하도
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측
량대지가 여러필지의 경우에는 경계확인
을 필요한 부분에 인접토지인에 한해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 대
단위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토지 소유자
의 측량참여 동의서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 함으로 사유서를 첨부해 측량신청을
협조하고 측량일시가 지정되면 인접소유
자 또는 해당 이장에게 경계복원측량 참
여록 지적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 劉燾文 委員 : 제가 한가지 보면 평
창 내고장소식, 해가지고 이래서 지적법
시행령 4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접토지소
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
의서를 지적공사에서 제출하게 되었는데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 할시에는 그 사유
를 지적과장님의 말씀이 첨부하도록 정

해져 있는 조항인데 지적법을 잘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불가사유만 첨부하라면
되는데, 평창에 있는 본인데 인접토지
소유자가 서울에 있었어요. 한번가서
못만났어요. 꼭가서 받아오라고 해서
두번째 가서 불가사유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면 꼭 가서 민원이 이렇게 두번씩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것을 보고 지적
공사 소장님께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
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지적과장님 이런것은
이렇게 담당계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군
민의 불편사항이 없어도 되는일을 두번
씩이나 여비를 내버리고 원거리를 갔다
오게끔 하는것은 감독이 소홀하다고 생
각하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지도를 철저히 해
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
다.

○ 劉燾文 委員 : 앞으로는 이런일이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알겠습니다.

○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유돈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행법인 감독기관은 평창군수를 얘기하는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이 불편사항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신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및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는 해보셨는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설문조사는 도단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본군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측량 지도감독 및 측량업무는 수시로 자체적으로 926건, 6,256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아니 여기서 그러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데로 도지사만 하는 것이지 군수는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애김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아닙니다. 도지사가 18개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이 시달되면 측량한 사람, 측량 종목별로 분할이면 분할, 합병이면 합병, 지목변경이면 지목변경등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측량집행참여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사유를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네. 가능합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동의를 못받는다,

이렇게 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반상회나 아니면 신문의 일간지에 군정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활자를 큼직하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특별히 이중삼중으로 원거리 시간 낭비하는 순진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겠끔 광고를 하실때 반상회라던가 하실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내고장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들른 내고장소식지도 소식지이지만 이것이 평창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반드시 일간지에 우리 군정홍보 하는 광고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도민일보도 있고 강원일보도 있고, 이런부분을 활자로 큼직하게 해서 온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와 해석이

갈수 있게끔 하실수 있지요?

○ 地籍課長 南大鉉 : 알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부탁드립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보고서류에 '96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현황이 나와있는데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고 한데 현지에서 보면 상당히 행정의 홍보가 널리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토지에 대한 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매년 시정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을 보면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만 처리하려고 그러고 주민이 자기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를 다운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높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안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잘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확정이 되면 전부 개개인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줘서 그런 불용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쪽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으면 고쳐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글썽 개별로 통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나온 과정을 보면 매년 해도 거의 모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60일간 열람기간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는사람이 몇 사람이나 와서 보는가, 토지소유자가 수백명, 수천명이 되는데 몇%가 여기에 와서 보는지 앞으로 적절히 봐야 합니다 그다음 여기는 좋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주민의견은 20-30%도 잘안되는것 같아요 앞으로 예를들어 땅을 지가가 엄청나게 높다 하면 낮춰야 하겠다 하면 반영이 되어 하는데 반영이 안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중대한 화재가 있고 또 지가선정에 걱정을 기하지 못했으면 면을 통해서 공문이 시달되면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97년에는 평창군 전 지역을 평창에서부터 도암까지 시가지 지역에 과거의 한때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지역현실과 맞지않게 지금 공시지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부과를 7건 해가지고 그 7건에 1억 5,800만원, 이 7건에 대한 업소별이면 업소, 아니면 사업대상자별이면 대상자별로 구분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1부 부탁드립니다.

'96년도 부과대상 추진계획 계속사업
19개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과금액은 얼마며 진수별로 징수예상
금액까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대상사업들
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부과징수
실적하고 부과대상 추진계획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禹康鎬 委員 : 제가 한가지만 더 질
의를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라면 어떤공유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불부합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아닙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면 불부합토지,
서로 상호간에 깔고앉은 부분이 평창읍
도 그렇고 진부나 대화 이런지역에 불부
합지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민원
이 야기되었을때 어떻게 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측량을 해서 서로
인접된 동의를 얻으면 처리됩니다.

○ 禹康鎬 委員 : 만약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어떻합니까?

○ 地籍課長 南大鉉 : 그것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실지
경계가 이렇다고 이해를 시켜서 합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
습니다.

(10時30分 監査中止)

(10時5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福祉課 所管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복지과장 박정자

(복지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했던 사항인데 96년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투자비가 5억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당초에 과장님 기억이 나실겁니다. 평창군에 공설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8개읍면에 현지답사도 하시고 여러가지 애를 쓰시고 그래서 위치선정을 할 당시에 대부분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각 면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방림면 현재 유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방림사람들만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해도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위치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자금으로 5억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강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방립면 출신이기 때문에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럴때마다 주민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지, 물론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96년도에 군비로 2억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금년 11월이 다 가도록 이 사업자체를 발주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동결되어 이월될것 같은데 왜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38억정도 가져야만이 공설묘지조성사업을 마칠수 있다고 하는데 6년동안에 5억 금년에 2억, 약 7억정도 그러니 매년 약 1억정도씩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또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군수한테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장도 여기에 대한 의자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6년동안 예산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몇번이나 다녀왔는지 또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 할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늦었는데 5억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군예산에 열악한 사정때문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도 투자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진전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께 15억원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좀 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께서 복지부에 가셨을 때에는 복지부에서 좋다고 했는데 제경에 가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자체에서 투자할 사업이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국비를 딸려고 복지부에 올라 갔다가 한푼도 못따고 반려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군비로 2억원을 세

위 놓았다가 도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에서 지금 도비를 따서 보내 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군비 2억가지고 그냥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했지만 도비가 다음에 조금 기다려봐라, 하다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3억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8억인데 말씀드린것처럼 약 34억만 더 투자가 되면 된다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25억만 투자되면 기반시설은 다해 놓고 1단지 묘역을 조성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모든 진입로나 간선도로, 이런 도로는 다 완벽하게 해놓고 2001년까지는 1단지 묘역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38억을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해놓고 묘역을 1단지, 2단지, 3단지 다 조성해놓고 사람이 죽을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10년이 갈지 어떻게 판단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단지만 해놓고 사망자의 대상을 보고 다음에 2단지 쌓고 그다음 또 3단지 쌓고 그렇게 하면 38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도하고도 그렇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를 따올려고 그러는데 국비에서는 이런 묘역조성하는 것에는 보조금이 될수가 없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하면 국비보조를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평창군 형편으로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할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계속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군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의 계속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말이지요.

이 사업은 전혀 새로운 건포가 내려올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예산지원이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군정방향을 달리 하던가, 차라리 그만두던가, 겨우 5년 6년동안에 돈 7억정도 투자가 되어 그나마 그전에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년에 평균 1억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한테도 저도 당의 중요한 간부를 한 사람입니다.

평창군공설묘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한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고, 과장님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그대로 그냥 국회의원한테 국비에산을 부탁할 정도, 또 도에는 도에다 얘기할 정도가 되어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실것인지, 그렇다고 1년에 1억 2억씩 해가지고 앞으로 감안해보면 40억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 福祉課長 朴靜子 : 1단지과 2단지를 2001년까지 해놓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국비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조금으로 공설묘지에 보조금을 줄수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보조금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법을 개정 해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걸로만 알고있지 정확한것은 알지못하고 있지만서도 저희들이 복지부에 직접 올라가서 한번 담당부서에 가서 또 한번 부탁 해 보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서류상에 실시설계도 다해 놓았고, 그다음 2억을 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성토나 절토, 이런곳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낭비가 되기 때문에 2억을 이월 시키는 계획입니다.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말이지요.

문제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해도 어려운 사업인데 특히 예산문제는 준비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려고 하면 여러곳을 다니시고 도에도 올라가서 로비도 하시고 이래도 될까말까 하는데 어떤 기록을 보면 평창 군수가 무슨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중앙에 갔다던지, 도에가서 얘기를 했다던지 그런 행정기록이 전혀 되어 있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1년에 1억씩이나 주면 받아놓고 다음에 조금 더해주겠다 기다려 보라 하면 기다렸다가 또 그사업비 자체를 명년도에 이월시키고 이런식으로 사업추진을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지 않느냐, 과장님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성을 다해서 가지고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용자 신청을 보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어떤분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지, 상환기간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용자 금처럼 연체이자가 가산되는지 또 계속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 福祉課長 朴靜子 : 생활안정용자는 우리 영세민들에게 1,000만원 범위내에서 용자를 해주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1년거치 2년상환에다가 이자가 높았습니다.

7%내지 8%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기금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 3년거치 3년으로 상환하는데 연 5%에 연체이자는 8%로 하고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들이 금해서 내는 돈인데 그 이자가 비싸서 연체이자가 비싸서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주민소득자금하고 별개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치기간이나 이자를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에 12가구에 약 1억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봤자 상당히 어려워 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구 방문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조금 지나보고 안되면 보증인에게 할려고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내는 분들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심의할때 어려운분들은 상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상환해가지고 다른 어려움이 있고 이런

○ 福祉課長 朴靜子 : 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보증인들을 두었기에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본인한테 계속 편지보내고 가정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다가 안되면 보증인한테다 독려를 할려고 합니다.

○ 劉燉文 委員 : 심사는 어떤분이 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규정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자립을 못하는 사람,

그다음 생업기반을 조성할수 있는 자활과 자립도, 또 생활안정을 도모케 하기 위해서 용자를 하면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 劉燉文 委員 : 용자현황에 보면 기타해가지고 지원금이 있는데 기타라는것은 어떤 것입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전세자금이나 축산자금, 영농자금, 상업자금이 아닌자금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필요하다던가 이런 상황을,

○ 劉燉文 委員 : 사업자금이네요?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劉燉文 委員 : 노인 공동작업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노인 공동작업은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짚신을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매 알선을 해주었고 제가 지금기억하기는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우리군에 몇군데나 있

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17개소 경로당에서 1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공동작업 운영을 10개 정도 한다고요?

○ 福祉課長 朴靜子 : 10개소 정도는 경로당에서 했고요. 8개소에는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그리고 노인정 연료비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것이 그것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연간 333만 8,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기본적인 것만 주고 그다음 나머지 것은 그 경로당에 늘러나온 회원님들, 그분들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지역에서 계시다가, 또 이것이 전적으로 100%를 다 필요로 하는대로 다 쓰면 역부족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 액수는 그 수준은 똑같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왜냐하면 영월, 정선군과 비교하면 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일단 노인의 숫자가 영월이나 정선보다 반밖에 안되는데 현실화로 안된다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노동능력도 없고 그런데 겨울의 연료비만은 우리 평창군은 현실화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노력하셔서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래서 저희들이 일거리 제공이라 해서 다른시군에 하지 않는 경로당별로 전체 경로당에 연간 20만원씩 드렸습니다.

일거리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그런것을 보태서 쓰라고 해서 줬습니다.

○ 劉燾文 委員 : 그래서 과장님 현실화된 연료비를 단체장님께 말씀드려서 노인들 겨울철 연료비를 현실화가 안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정선이나 영월같은 곳은 우리군의 배가 됩니다. 경로당 수가, 그런데도 거의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평창군도 노인네들이 모여서 겨울에 차가운 방에서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지금 경로당에 읍면 분회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에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공동자금이 몇천만원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돈은 한푼도 안쓰고 자꾸 달라고만 하니깐 그리고 또 지역에서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화같은 곳은 부녀회에서 몇드럼씩 해서 드리기도 하고 우리 평창에도 연료비를 그런식으로 드럼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촌에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촌에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장소도 좁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걸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 劉燾文 委員 : 지금 현실에 자금이 있다던가 그러는데 그것은 그곳의 문제

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유돈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 방법, 조건이 어떻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분들은 영세민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인데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 소를 기를때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분들은 아니고 그런것에 조금만 보태주면 굉장히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1,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용자조건이 담보라던가 보증인이라던가 이런것이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다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용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용자지원은 근거당 설정이 1,000만원 이상이 되겠고 그다음 보증인 2명하고 인감증명입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보물하고 보증인하고 같이 들어가나요?

○ 福祉課長 朴靜子 : 예,

○ 李洙現 委員 :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연대보증인만 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담보설정만 하든가, 이러한 어떤 대출요건을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왜냐하면 대출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 李洙現 委員 :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요건이 까다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내고는 싶은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대보증인만 제출을 한다든가, 담보만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의료보험조합지도감독실적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25쪽을 보시며는 아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실적 이래놓고 내줄만 써놓으셨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의료보험조합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성의가 너무 없는것 같고, 다음에 장평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 될 용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 시설에는 없구요. 앞으로 시설을 더 보완을 한다든가 집기같은것을 노인들이 필요로해서 요구하는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필요한것이 더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을 할려면, 두사람 정도는 필요한데 한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한사람 정도만 인건비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洙現 委員 : 과장님께서서는 추가로 건축비는 추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말씀

하셨고, 집기라든가, 기타 추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노인들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들어간다는 책을 산다든가 이런것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다른곳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책 같은것은 살수도 있고, 또 운동기구를 몇가지 생각을 했는데, 노인들이 더 요구를하면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의 일용잡급 정도의 인건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통계가 얼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서에 건축이 끝나면 추가로 군비가 얼마나 들어 갈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는 안해보셨나요?

○ 福祉課長 朴靜子 : 정확하게 뭐 유류대가 얼마다라고는 안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앞으로 장평노인복지회관이 끝나면 집기라든가 기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福祉課長 朴靜子 : 예,

○ 李洙現 委員 : 다음은 관내 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처분을 47개소하셨는데, 본위원회 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이 어떤 큰도둑은 다놓치고 사실상 좀도둑만 잡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찌다가 선량한 업자들이 일이십분 영업시간을 초과해서 한두달씩 영업정지를 받는 부분을 제가 수차례에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영업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들 회의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단호하게 처

리 하도록 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영업시간을 넘긴다는 것이 어떤 손님을 받아서 음식을 파는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뒷정리를 하다가 식구들간에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서, 생길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도독을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억울한 이러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실지로 2시, 3시, 4시까지 장사하는 대형 업소도 한번도 단속 실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알고 있어요.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것은 전혀 없고 좀도독만 계속잡아 들어서 억울하고 영세한 음식점들만 적발이 되어서 한달에서 두달까지 영업정지를 먹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福祉課長 朴靜子 : 억울하면 청문을 하라고 합니다. 청문할수 있는것을 하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넘어오는것이 있고 청문하라고 했을때에 청문을 와서 할때에 그대

로 잘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까지 안됩니다.

○ 李洙現 委員 : 청문을 해도 청문하는 과정에서 반영 된것은 전혀 없어요. 영업정지를 먹겠느냐, 과태료를 납부하겠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실지로 법을 악용하는사람, 위반하는사람을 적발을 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분, 이러한 업자들은 보호를 하시는 차원에서 아마 위생업소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되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단속도 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안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소위 말해서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과실죄에 해당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상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 입니다.
50쪽에 구호물자 수해의연금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서류에 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수해의연금 및 구호물자 등을 수입 처리한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창군은 수해도 많이나고 수해에 따라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는데 군내에 수해의연금이라던가 그다음 구호물자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기탁자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받을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고 그분들에게 신문사나 또 방송, 그런곳으로 갔다가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아서 없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도 기탁하는 사람이 있는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것입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은 신문사나 KBS방송사 이런곳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받지않았기 때문

에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전혀 없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이나 돈을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끈어줘야 하는데 기부금품을 받을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다음장에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이것이 청소년법에 의해가지고 청소년육성 위원회를 육성하는데 법이 금년 7월 30일에 개정이 되었드라구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조례가 명칭이 바뀌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서 구성을 해야하는데 7월 30일자에 하다가 보니까 아직 개정이 못되었더라구요.

내년 상반기내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을 해서 조례를 해서 위원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명칭은 있습니다만, 한번도 그동안 위원

회를 했다던가 사업을 했다던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읍면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연말년시에는 그분들이 읍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 선도업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 金鍾永 委員 : 이 밑에 보면 평창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89년 7월 3일개정 및 '91년 1월 17일 개정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이것이 군에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 福祉課長 朴靜子 : 있긴 있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한것은 7월 30일자로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전에 있던 청소년육성위원회도 그런것입니다.

○ 金鍾永 委員 : 다음 페이지에 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실적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정식품에 대한 단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업소가 나와있고 그다음 재래시장이라던가 제조.가공업소 해가지고 나와있고 밑에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나와있는데 수거해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여기서는 할수 없구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 金鍾永 委員 :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오자면 얼마나 걸립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립니다.

○ 金鍾永 委員 : 앞으로 불량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福祉課長 朴靜子 : 직원들이 계속 수

거를 하다가 또 환경연구원에다가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 앞으로 그런 식품이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 이런곳에 그사람들이 저희들이 일제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보내놓고 기다리다 보면 벌써 장사도 안하고 이런 상태도 있고 그다음 슈퍼나 이런 곳에는 어묵같은것이 날짜가 지난것이 나오거나 그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조사 하는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여기서 할수 없는것은 보낼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金鍾永 委員 : 강력히 단속을 한다던가 어떻게 수시로 단속을 많이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는것이 한달에 몇번이나 됩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지금 직원이 계장님까지 세분인데 지금 업소들이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세분이서 밤 2시까지 영업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단속을 나가도 2시가 되어 단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끝나고 들어오면 4시, 5시가 되고 그다음 매일매일 민원서류가 들어오는데 한사람은 거기에 매달려서 현지답사하고 한사람은 야간단속 나가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적으로 여기에 한사람이 매달릴수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용잡급직 한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 그래도 컴퓨터라도 쳐주면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날짜가 지난 식품같은것은 앞으로 열심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예. 알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 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노인건강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그다음 1차검진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2차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1차 하셨는데 몇분이나 2차 대상자가 나왔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처음에는 500명이였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 보겠습니다. 50명 입니다.

처음에는 500명씩 했는데, 이제는 1차하고 2차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C.T 촬영까지 해줄수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서 50명 입니다.

○ 劉燉文 委員 : 다른 인근 군을 보며는요. 여기 50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군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군은 50명 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또 1년에 두번씩해야 되는데, 한번 밖에 안하시면서 50명, 다른 군은 우리에 비하면 몇배나 많은데, 이것은 저조하게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은 국비하고 군비에 예산에 의해가지고 명수가 지정이 되어 내려 옵니다.

그리고 500명 할때를 보니까, 노인들이 의료보험카드나 의료보호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의료보험카드, 영세민인 경우 의료보호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러 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문제점이 이것을 알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분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의료보험카드가 있어서 안한다고 했는데, 검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되고 또 노인들이 의료보험카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달라고 해야하는데 곤란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내가 건강 진단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챙겨서 노력할 수 없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노인분들을 정상적으로 병명을 밝혀 낼려고 하려는 피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료로 해주는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명씩 할때는 저희들이 모시

러 다녔어요.

안오셔서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모여 계
시면 모시러 가고 그랬어요.

계속 검진을 한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돌아 가면서 진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아까 과장님 노인공동
작업장운영 여덟군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요?

또, 여덟군대를 운영을 해서 소득이 있
으면 소득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알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증식을 위하여 감
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4時0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45쪽에 보시면 병·의원별 의료보호진료

보험료지급현황은 95년도 미지금액과 96
년도의 미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 福祉課長 朴靜子 : 우리가 가지고 있
는 현황은 지금현재의 현황만 가지고 있
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미납액이 많은 이유와
해결방안과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선의의 피해는 없을 것인지 또한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로인해 진료거부
문제가 대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진료비가 국도바
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약 4억 3,000만
원이 미지금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
올수 있는 금액은 8,500만원하고 불투명
하지만 추경에 될수 있는 금액이 7,300
만원, 그외에는 금년도에 내려올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누적이 되었는가 하면 당초에
에는 180개의 진료기관이 240개로 늘어
났고 거기에 대해 생긴 금액이 많고 그

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을 해
볼려고 도에도 여러번 전화를 하고 찾아
가기도 하고 했는데 군비 부담은 하나도
없고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상
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안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급액이 지원될수 있도
록 하면서도 지금 평창관내에 영세의료
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부터
지급해주는 그런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
겠습니다만, 국도비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관내 병의원중 95년도
와 '96년도의 미지급된 진료비 현황은
없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별도로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金斗經 委員 : 과장님 년도별로 분리
해서 부탁드립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 입니다.
41페이지에 병·의원 의료보험료 부당청
구현황에 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
사시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본군에 통보
하여 게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통보된
건수가 없음, 으로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영월군에서 7건의 부
당청구 사례가 있었고 정선이 6건, 평창
군이 386건이 있었던것으로 자료가 있는
데 이 내용과 다른겁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부당청구해서 저
희들한테 통보된것은 저희들은 현재로서
는 없는걸로,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강원도 감사자
료에 제출한 것은 386건이 되어 있거든
요.

○ 福祉課長 朴靜子 : 의료공단에서 저
희들한테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한번 알아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내면 의료보험공단에
서 그것을 다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
테 부당이 있다 초과가 되었다 이런 것
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것을 보세요. 이 내용하고 다른것 인지, 제목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노인장수식당을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18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도 평창군하고 고성군만 도비지원이 한 푼도 안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곳은 전부다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 福祉課長 朴靜子 : 저희들은 도비가 아니고 50%는 사회복지 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되는 2개 군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된다구요?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李慶鎭 委員 : 우리군만 도비지원이 안되나 하고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현황 중에 단순민원 취하한 서류중에 복지과에서 몇건이 있는데 그중에 "이완정"라고 명의이용허가 득한후 승계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취하

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취하를 해야 하는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보완을 하더라도 별로 관계가 없을것 같은데 보완하고 취하한 경우에는 보완하면 민원이 한번오면 되는데 취하하면 두번씩 와야 하는데 취하를 시켜서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취하를 자진해서 했는데 그다음 영업자 지위승계를 아예 안하고 사업을 안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다른것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양도양수 하는것을 취하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취하를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李慶鎭 委員 : 그런데 취하를 했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정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취하를 권유한 그런 생각이 있

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취하인지 보완을 해야할 사항인데도 두 번씩 군에 출입을 해야하는 불편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측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할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런것은 없구요. 그분이 영업을 자기이름으로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계하는 것을 취하를 한겁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니까 승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독립을 해서 별도로,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李慶鎭 委員 : 그다음 민원서류 접수 일자가 2월 27일날 되어서 2월 28일날 취하된 서류 김순자, 보호위원 기간연장 승인, 그런데 연장승인하지 못할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연장이 안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연장을 해줘도 될것 같은데 안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판단이 안가거든요.

○ 福祉課長 朴靜子 : 교통사고 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비에서 지급될수가 없구요. 그다음 본인이 집에 왔을때에 입원을 하겠다고 왔을때에 그 설명을 충분하게 해드렸습니다. 교통사고는 의료보호비가 지금이 안됩니다.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을 해서 갔는데 또 이 서류가 들어오고 병원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것은 교통사고 내용이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갔다는 복명서도 거기 제출되었고 그다음 그 가족이 왔을때에 첫날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다음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 10일날 접수해가지고 7월 13일자로 사업목적 설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불허 처분을 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 설

치허가 정혜원, 과장님 일단 의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복지과장님으로서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자세한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유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인은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UN이 인정하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증서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불허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설치 사업계획서상 국비보조는 9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두번째로 현재 우리군 재정여건상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 그런데 국비를 본인들이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으로 하는데 의지가 있으시면 국비가 확보가 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군비부담 할수 있는 부분도 염려하셔도 되는데 복지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이 업체가 이 법인에서 앞으로 다시 재신청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

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지없는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역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사회복지 법인에서 이웃사랑회가 있습니다. 옛날 선명회고 현재는 이웃사랑회인데 이분들이 벌써 몇년전부터 우리 평창군에다가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여러번 평창을 방문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업계획서가 노인복지회관의 사업계획서하고 비슷한 그런것이 많고, 또 우리 평창지역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평창읍내에 2개소가 있고 또 유치원이 2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2개소가 있고 이런곳에다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동의 숫자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용할 아이가 있어야 그런것을 하니까 그것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사업은 빼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가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그

런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고, 그다음 불투명했다 하는것은 국비가 불투명 했다는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보고 복지부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라는것이 정확하게 주겠다 하는 그런것이 그쪽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사업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하는데 국비를 법인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사업승인을 요청하는데 법인에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박수치지는 못할망정 군비부담을 너무 의식 해가지고 허가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 사업계획서 중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던가, 여성복지시설에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여성복지회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그당시에 이 한국 이웃사랑회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받아

들였을때 지금 과장님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상충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군비를 들여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만들것이 아니라 한국이웃사랑회에서 UN에서 인정하는 이런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쪽을 지금이라도 권유를 하고 허가가 날 수 있게끔 우리군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런데 군비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복지회관 문제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생각하시는것 아닙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한국이웃사랑회는 국비를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를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 李慶鎭 委員 : 우리 자체에 없는 군비를 가지고 100% 여성복지회관을 할것이 아니라 한국이웃사랑회를 지금이라도 다시 불러서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

는데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도와 주겠다, 이렇게 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계속 준비만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땅을 우리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준비를 해서 지어서 이웃사랑에다 운영권을 주겠다 이랬는데도 그 부지를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李慶鎭 委員 : 그 문제는 이웃사랑이라는 그 법인이 UN에서 인정하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이웃사랑회라는 법인에 대해서 뭔가 불신임까지 정확하게는 법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UN에서 인정하는 등록업체로서 등록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하겠다 라고 왔을때 그때도 어렵다고 계속 얘기 하시는 겁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운영비고 뭐고 다 준비에서 나와야 하고 그다음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지어서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마다하고 자기네들이 지어서 할테니 준비를 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할것이 그전에는 이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한국 이웃사랑회라는 법인이 쉽게 말씀드려서 유명단체인지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과연 이것이 사회에서부터 인정받을수 있는 단체인지에 상당히 의문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아닙니다. 선명회라는것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의 친정부 친께서 이 선명회를 평창군에 끌여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명회에서 우리 평창군에 지원해준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선명회를 불신임 한다던가 일을 못한다거나 그런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선명회에서 세계적으로 일하는것을 저도 알고있고 또 찾고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이웃사랑회에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당신네들한테는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군에서 물어봤을때는 불투명 한것으로 얘기를 하니 그러면 복지부에 가서 정확한것을 몇%를 해주겠다 하는것을 받아서 가지고 왔으면 또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가셔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저하고 여러번 통화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것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유사한 복지관리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 李慶鎭 委員 : 국비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비보조를 받지 못할것이다 하는 선입견 같은것은 버리시

고 조건부로 예를들어서 법인을 상대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사업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군수가 결재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시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올리기 전에 안될것 같으니까 사방 구두상으로 전화로 물어보시고 우리가 알아본결과 안되는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것 보다는 그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못따오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다음 전제각서 같은것을 하나 받아놓고서 군수가 결재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래서 저희들이 60일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나 또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 李慶鎭 委員 : 이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편의 위주로 60일내로든 70일내로든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 이런사람들이 평창에 와서 사

업을 하고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사회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재판하고 소송하고 안할려면 몰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토지에 대한것 때 문에.....,

○ 李慶鎭 委員 : 이상 마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우강호 위원 입니다. 5쪽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수납 현황을 보면 1,360만원이거든요. 20가구에 1,360만원이면 실지 한 가구당 70만원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요즘 개인적으로도 7,000만원도 빚지고 사는데 한가구당 70만원정도 미수납액은 미수납액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또 이분들은 다른사람들하고 틀린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40회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전에 김영주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재정보증인 없이 용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다음 보증보험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담보제공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고 보증보험증서를 발급 받아서 용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지 대출 한도액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1,000만원 해당자가 아닙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禹康鎬 委員 : 재산세를 1천원에서 2천원정도 본인이 낼수 있다던가, 아니면 낼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1천원, 2천원정도 세금을 낼수 있는 그런 재정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자금 용자 받으려고 굳이 관에다 많은 서류를 집어넣고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 과장님께서 잘 아실겁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이제는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니까 강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구가 안되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개선의 의지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미수금문제 보다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하셔야 될텐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들 앞으로 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어서 불려고 하는 의지로 요청을 한다면 자격요건이 안된다면 복지과장으로서 해줄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을 다시한번 지금 말씀하신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1,000만원이 있으면 일어서야 되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용자라는 것이 꼭 그런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용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의한것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지방자치단

체장이 지역에서 선출한 단체장이 아닙니까, 이 단체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는 그런 보장만 있으면 실지도 에다 질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 배정된 금액이라면 단체장 책임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사람이 돈을 떼어먹지 실지 돈 없는 사람은 남의돈을 안떼어 먹습니다. 20가구해서 1,360만원 이것 사실 미수금이라면 돈을 무지하게 잘 낸겁니다. 또 최대한 남의돈 먼저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충분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양질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서 반드시 이런분들이 혜택을 받고 다시 설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중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증설 해가지고 새로짓는 종합민원실 청사는 별도로 장애인 민원창구 그런것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가면 제가 진부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장애인은 올라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계단이 일곱개인지 여덟개인지 있는데 불편한 분들은 사실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런것도 휠체어가 옆으로 돌아서 올라갈수 있는 길을 만든다거나 그런 실질적인것이 필요한것 같은데 그런것을 생각해 보신것은 없습니까?

새로운 시설은 어차피 할것이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제가 거기에 달한걸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들도 올라갈때 계단이 많고 그래서 그런분들이 오시면 업어가고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읍면만이라도 다른기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해주니까 읍면 사무소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장애자들이 휠체어 정도로 타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회관이라던가 장애자협회,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못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다른과의 예를 든다면 물론 농정과도 있고 다른과들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서도 실지 매년 풀보조금이 아닌 정규 사업예산에서 행사비용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실지 장애자 문제들도 우리가 한편으로 그분들보다 더 어렵게 아니면 더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군에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그다음 그때 주고 싶은사람 일부도 있습니다.

그런 금액인데 그러면 그분들도 다음의 행사준비에 차질을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정확히 얼마정도 보조받을수 있고 얼마정도 지원해줄수 있는 금액을 알잡아요. 행사 규모라던가 모든것을 짜임새 있게 미리 준비도 할수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군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타과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체육대회던 아니

면 다른행사들도 있으니까 복지과에서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아니면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좀 챙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97년도 사업에도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당초예산 검토를 다 마쳤는데 이런것이 안올라왔어요. 그런면 결국 풀에서 나중에 행사규모 라던가 이런것을 지원하실텐데 복지과장께서 내년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 같은것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단체는 창립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1년동안에 무슨행사를 하드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건에 대해서 감안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복지는 우리 평창군이 창설된지가 얼마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런것을 군에가서 예산을 미리 얘기해서 하는 그런것도

모르셨드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다른 정액보조단체처럼 할 수 있도록 풀보조금에서 정액 액만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의논이 되었고 그다음 행사는 1년에 무슨행사 무슨행사 하는것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협회장하고 저희들하고 다짜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원 해주는걸로 이렇게 기획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실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부서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서류자체를 그 실과에서 사업계획서고 뭐고 다 만들어줘서 정산서까지도 다 만들어 줘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미리 행사계획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실지 그분들이 손이 불편하시거나 워드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각별히 가지시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행사계획이 어느시점에 있는지,

각 읍면에 가면 제가 진부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장애인은 올라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계단이 일곱개인지 여덟개인지 있는데 불편한 분들은 사실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런것도 휠체어가 옆으로 돌아서 올라갈수 있는 길을 만든다거나 그런 실질적인것이 필요한것 같은데 그런것을 생각해 보신것은 없습니까?

새로운 시설은 어차피 할것이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제가 거기에 달한걸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들도 올라갈때 계단이 많고 그래서 그런분들이 오시면 업어가고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읍면만이라도 다른기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해주니까 읍면 사무소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장애자들이 휠체어 정도로 타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회관이라던가 장애인협회,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못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다른과의 예를 든다면 물론 농정과도 있고 다른과들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서도 실지 매년 풀보조금이 아닌 정규 사업예산에서 행사비용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실지 장애인 문제들도 우리가 한편으로 그분들보다 더 어렵게 아니면 더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군에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그다음 그때 주고 싶으신사람 일부도 있습니다.

그런 금액인데 그러면 그분들도 다음의 행사준비에 차질을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정확히 얼마정도 보조받을수 있고 얼마정도 지원해줄수 있는 금액을 알잡아요. 행사 규모라던가 모든것을 짜임새 있게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타과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체육대회던 아니

면 다른행사들도 있으니까 복지과에서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아니면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좀 챙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97년도 사업에도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당초예산 검토를 다 마쳤는데 이런것이 안올라왔어요. 그런면 결국 풀에서 나중에 행사규모 라던가 이런것을 지원하실텐데 복지과장께서 내년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 같은것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과 저희들하고 협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단체는 창립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1년동안에 무슨행사를 하드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건에 대해서 감안하고 있는 것인데 장애자복지는 우리 평창군이 창설된지가 얼마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런것을 군에 가서 예산을 미리 얘기해서 하는 그런것도

모르셨드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다른 정액보조단체처럼 할 수 있도록 풀보조금에서 정액 액만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의논이 되었고 그다음 행사는 1년에 무슨행사 무슨행사 하는것을 알고 있으니까 미리 협회장하고 저희들하고 다짜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원 해주는걸로 이렇게 기획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실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부서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서류자체를 그 실과에서 사업계획서고 뭐고 다 만들어줘서 정산서까지도 다 만들어 줘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미리 행사계획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실지 그분들이 손이 불편하시거나 워드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각별히 가지시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행사계획이 어느시점에 있는지,

알고 계시니까 미리 불러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행사 준비가 언제쯤인데 언제쯤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서 상의해서 정상적으로 아, 우리한테 참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소외받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38쪽을 보면 '9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평면 이목정리 주식회사 동원산업 대표이사 오동빈씨가 100만원을 내셨거든요.

그다음 쪽 내려오다보면 다시 또 동원산업에서 500만원을 냈습니다.

모금방법, 모금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연말이 되면 모금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일정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안에 가지고 오시는것은 저희들이 1차로 접수를 해서 도로 올리

고 그다음 추가로 가져오시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두번 가지고 온걸로,

○ 禹康鎬 委員 : 가지고 왔는데 두번다 모금기간외 입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은 제가 모금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모금기간외에 100만원 500만원 냈는데 그러면 이 시기,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모금기간외에 100만원, 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는데,

○ 福祉課長 朴靜子 : 자료에는 날짜가 안나왔지요?

○ 禹康鎬 委員 : 네.

○ 福祉課長 朴靜子 : 저희들이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제출을 해주시는데 모금방법을 모금기간외에 지금 들어온 금액들 이거든요. 실지 의문이 사실 많이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모금기간 내,외를 구분해서 두번을 냈으면 모금기간에도 한번 낼수 있고 또 들어온김에 다시한번 낼수 있는데 모금기간외에 두번을 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100만원은 체면상 낼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테고, 100만원 내고 또 100만원을 낼려면 거기에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거다, 외압에 의해서 한번쯤은 다시한번 갔다 돌아와서 500만원 낼수있는 부분도 있을거라는 애깁니다. 그래서 모금 방법을 주로 기업체들인데 간단하게 모금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은 이분이 왜 이렇게 내셨는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업체에서 그기간외에 하는것은 기간내에 방송도 나오고 계속 홍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쳐서 그다음 지난 다음에 오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해도 그것을 날짜를 잃어버려서 지금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禹康鎬 委員 : '95년, '96년 실적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다음 기간내 접수된 것들도 거의 이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군하고 협조문제가 이루어졌을텐데 기간외에 이렇게 다시 두번 낸 부분, 아니면 한번낸 부분, 그다음 제 개인적으로 볼때 건설업자들도 있고 이런데 아니면 주로 여기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러면 모금방법에 어느정도 외압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만,

○ 禹康鎬 委員 : 자진해서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 내기가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유성종합건설 300만원 내시는 건데 많이 내신 금액이거든요. 이분은 혹시 수의계약하고 관계되어서 이런것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런데 내시는 분들이 금액이 해마다 비슷하게 나갑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런데 이분이 95년도에는 안내셨잖아요?

○ 福祉課長 朴靜子 : 내시는 금액이 다 비슷비슷 하니까,

○ 禹康鎬 委員 :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동원산업 대표이사 오동빈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100만원, 500만원 두번씩 냈다는것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100만원 낼려고 왔다가 내고 외압에 의해서 두번내지 않았나 생각되어 질의했습니다. 날짜별로 모금방법을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96년도 성금지출 내역에 보면 11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대화 신리초등학교 입구에서 불이나서 전소된 것을 아시지요? 장애자가 있는집.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禹康鎬 委員 : 그런집은 지원해 주셨나요?

○ 福祉課長 朴靜子 : 저희들이 적십자사에서 생활필수품이 육십몇가지가 들어 있는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 禹康鎬 委員 : 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것하고 쌀하고 라면하고 적십자에서 그런것을 전달했고 이웃돕기 성금에서 3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다른 가구들과 같이 지급되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禹康鎬 委員 : 11월 11일까지만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 제가 장애인 취업현황 및 공무원 채용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평창군에는 별도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 통계가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오늘 매일아침 신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군에 3명이 있어서 100% 라고 나왔

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네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아픈마
음을 건드리는 것이 되어서 별도로 명단을
따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것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단도 저희들이 제시하
고 그랬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아픈마
음을 건드리고 유인물이 배포가 되고 그렇
게 답변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글썄요. 이해는 좋
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채용 현황에 대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
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
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밖에나가
서 그 공무원이 장애인으로 들어온 공무
원이라고 얘기할수 있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실겁니다. 그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내주셨어야 하는데 통계는 없으며 별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지하기 바랍
니다 했는데 사실 이런자료는 조금 생각
을 다시한번 해주셔야될 부분입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그런것 때문에 저

희들이 그런것이 있었는데 명단을 제출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
해서 앞으로 우리 6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도 네분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
까? 상당히 많은 인원에 포함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능력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분들도
다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장애인들 현황하고 공무원채용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禹康鎬 委員 : 그다음 51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실적
해가지고 다른의원 몇분이 질의 하셨는
데 원래 사회진흥과 소관이였었기 때문
에 복지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때 상당
히 애로사항이 많으신것 같은데 조례개
정이나 이런것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7월달에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그 이전에 되었던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실무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지금 하고있는 청소년어울마당에는 청소년단체 육성에 대한 그런것을 군수 혼자 의지로서 아니면 사회진흥과장 혼자 의지로서는 가능 했지만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도 회의한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사업만 시행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사회진흥과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알수 없어서 저로서는 정말 무엇이던지 예산이 범위내에 허용이 되는한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어서 학생들이나 지역의 부녀자들이 굉장히 좋

아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네.

○ 禹康鎬 委員 :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을 시행하면서 실무위원회, 운영조례까지 개정하지 않았어요. 이렇다면 사회진흥과장이 사회과장 재임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 안만들었습니까?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공포를 해가지고 충분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시켰어야 하는데 위원회 조차도 조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지 전에 있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상 위법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평창군 청소년 정책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왔다는것이 심히 괴로움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 위원회 포함해서 청소년 문제를 도시과장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조

례는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확실한 의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박정자 : '97년도 상반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가 더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청소년 선도 위원회가 없다고 그래서 청소년 선도 업무가 소멸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 업무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갈수있는 길이 있으면 정확하게 바로 가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는데서 변칙이 있는것이지 원칙이 없는데서 변칙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동원산업 자료는 올라 왔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여기에도 이웃돕

기 접수대장에도 몇월 몇일날 어느회사의 대표 누구가 얼마를 접수했다 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뭐고 왜 1차에 100만원하고 2차에 500만원하고 그런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러니까 100만원을 언제 주셨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100만원을 96년 2월 16일날 대표이사 오동식씨가 100만원을 내셨구요. 500만원은 3월 6일날 내셨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그럼 2월 16일 시점하고 3월 6일 시점하고 그 기간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20일 차이가 납니다.

○ 禹康鎬 委員 : 20일 차이에 어떠한 이유에서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자발적으로 냈는데 또 500만원을 내게 되었을까요?

○ 福祉課長 朴靜子 :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한것이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왜 그렇게 두번을 모금기간을 지나서 1차하고 또 이후에 500만원을 갔다 냈느냐, 그것은 본인한테 제가 여쭙 봐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아닙니다. 본인하고 문제가 아니고 동원산업 대표이사 오동식씨 제가 아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여기에 상주하지 않는 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불일이던 동원산업에 관한 불일이던 불일차 들어와서 100만원을 내 스스로 내고 싶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20일 뒤에 내가 다시 또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때 100만원 낸것이 너무 적은것 같으니까 500만원 더 내겠습니다, 하고 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이 500만원을 내게 된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지 이것을 기간 지난뒤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디가서 소주한잔 마시고 좋은집에 가서 술을먹는데 1~200만원은 쓸수 있어도 남을 돕는데 이렇게 내기는 이분들 무시하는것이 아니고 쉬운일은 아닌데 20일간격으로 100만원내고 500만원내고 나중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100만원을 더내는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00만원을 냈던 사람이 다시 20일뒤에 500만원을 낸다면 속된 표현으로 100만원 낼라면 내지말아라 하는식의 접수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느분의 외압에 의해서 100만원을 내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거라던가 하면 20일뒤에 이양반이 다시 내려 왔을때 어쩔수 없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500만원을 낼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일간격으로 두번 낸다는것은 그런것을 한번 생각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의심은 우리가 그

렇게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의심은 가나 심증을 굳힐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禹康鎬 委員 : 2월 16일하고 3월 6일 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받을때 그때 가정 복지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 福祉課長 朴靜子 : 이것이 사회과에서 접수 한겁니다.

○ 禹康鎬 委員 :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 업체들한테 가서 자발적으로 내라 그러면 그 기간이 홍보가 되던 홍보가 되지않던 그 기간내, 외를 막론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한 업체에서 두번을 받는다는 것은 적던 크던간에 액수하고 상관없이 다소 우리가 따랐다고 보는데 복지과장께서 답변할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날짜별로 자료를 내주시고 가능한한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기 힘든다는것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한 회사에 이렇게 두번씩 한다거

나 특히 다른분들 선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내줄수 있는분들 아니면 굳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도 가능할텐데, 관허 사업이나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에서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노성제할때 성금, 축의금,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양될 부분인데 복지과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동원산업 대표이사에게 전화해보면 제일 정확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만일 그분이 여기오셔서 과장님 위에 상급자를 만났다고 하면 그분의 외압에 의해서 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지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것 같은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명심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상입니다.

○ 幹事 金斗經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00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環境保護課 所管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환경보호과장 조규식

(환경보호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薰 委員 : 이상훈 위원입니다. 방림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림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14억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예산 자료에는 제가 바쁘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를 해 보지는 않

있지만 약 1억 5,000만원정도 계상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림면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방안이라고나 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방림면 운교1리 하천변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천에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느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산과에서 감독을 하는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만일 환경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현지확인을 한번 해봤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 행정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방림면쓰레기매립장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방림4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에 이견이 있어서 방림3리 음골 189-1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총면적 6,255평으로서 조성계획은 약 1,300㎡로 39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역시 소각후 준호기성 위생매립을 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하고 쓰레기소각시설 시간당 195kg/hr 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1식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금년도에 쓰레기소각시설 예산확보를 1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 위치변경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은 내년도에 확정된 위치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내역은 전체 5필지 중에서 2필지가 동의를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립장 위치라던가 매립장 설치에는 커다란 문제점까지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가 5,200만원, 환경성검토용역이 2,000만원, 부지매입비가 6,000만

원, 기타 잠정 수수료 해서 350만원
총 1억 3,5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
던가 또 내년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교리 하천변 방목분뇨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제대상에 대한 지도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다.

규제미만시설 단속에 대해서는 축산과에
서 지도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제대상 미만 축사는 350㎡미만이 되겠
고, 그 이상은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7일에서 6월 14일까지 관내 축산폐수 배
출시설에 대해서 31개소에 대해서 저희
들이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규제
대상인 그런 축산폐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운교리에 하천변에 방목하는 축
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가
서 배출시설을 할 그러한 것인지 아닌지
를 판단해서 적극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
린 단속에는 총 허가대상 31개소를 점검
을 실시한결과 개선명령을 3개소에 대해
서 한바 있습니다.

○ 李相薰 委員 : 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 방림면쓰레기매립장 예산문제
는 당초예산에 1억 3,500만원정도 계상
이 되었다, 이것이 추후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한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데 수정예산에 무슨 재원이 있다고 1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되지도 않는것이 있고, 과연 방림
면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
가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런식
으로 예산을 적게 배정한다고 보면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
디 과장님 수정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
데 과장님이 판단했을때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합니까?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적게된 예산이 더
욱 평창군의 실정으로 봐서 수정예산이
가능하겠느냐, 아예 이 계획을 세우지

말던가 말이지요. 또 본 위원이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립면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없는곳이 방립면 밖에 없어요. 8개읍면중에 7개읍면은 다 되어 있고 방립면은 없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쓰레기매립장조성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재원확보 가능성이 있고 또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14억 5,000만원, 15억정도 투자되는 이 사업이 예산사정이 그렇다 하면 이것을 언제 할겁니까?

그리고 운교천 축산농가 소 키우는 농가들은 그 소를 하천에다 방목을 해가지고 그것이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계속 늘 하천오염하고 이것을 관에서 한번도 나와서 점검도 안하고 지적도 안하고 말이지요.

본위원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것은 전혀 기관에서 단속을 안했거든요. 안하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이 아예 하천에서 방목해서 막키워도 되는 걸로 인식들 하고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 출장을 몇번씩 나와서 지도를 하면 그렇게까지 무관심하게 하천에다 방목을 안할텐데,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예산문제는 과장님께서 하실려면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사업을 할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던가, 안하면 아예 방립에는 쓰레기매립장이 필요없으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던가, 본위원이 재선위원으로서 초선위원때도 여러번 말씀드렸더니 그때 당시에는 대화면의 쓰레기매립장이 소각장이 시설이 약 30억가지고 왔는데 다 되면 방립면 쓰레기를 거기다가 내버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참아왔는데 대화사람들이 방립면쓰레기를 갔다가 소각하는것을 좋아할리가 없고 그래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재래식이던 소규모던 여러번 말씀드리고 한 사항인데 예산부서하고 절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할려면 그만 두세요. 이상입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5쪽에 보시면 대화산업개발
비산먼지 발생 및 오수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데 96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중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7일인데 실시결과가 나
온것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지난번에 대
화산업개발 현장 확인시에 이 위원님께
서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
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비산먼지 측정장비라던가 가
스분석기라던가 이런것을 '96년도에 예
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현재 각종장비를
그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일부 운영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개선명령 내린 사항
하고 확인결과 하고 나온것이 있으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그것은 제가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관내 송어양식장이 몇개소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송어양식장이
현재 평창에 1개소하고 미탄에 12개소
대화에 2개소, 봉평에 1개소, 용평 진부
에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송어양식장의 우수인
용허가가 기간이 몇년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우수인용허가
는 축산과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참고로 말씀이 나온김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 송어장에 대해서 지금 우수
인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지금 행정소
송까지 가고 있는데 축산과 소관입니
다 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축산과와 협
조를 해서 특히 우리 주민소득과 연계되
지도 않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
고 있는 일부 송어장에 대해서는 양개부

서에서 협조를 해서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염물질이라던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양개부서에서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질의한것에 대한 답변 준비는 되셨습니까?

○ 委員長 禹康鎬 :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자료준비와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時50分 監査中止)

(16시00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죄송합니다. 대화산업개발 비산먼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31개가 있습니다.

이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비산먼지 단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무자가 그동안 교육을 1주일을 가있어서 완료는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월 5일까지 단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화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5일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준수명의를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화산업개발에서는 현재 야적물질은 야적덮개로 덮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야적물질 함유율이 항상 7내지 10%가 유지되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2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대를 12월초에 설치예정으로 지금 기계 설비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구간내 살수차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을 이용해서 항시 살수할수 있도록 1회에 10회이상 살수할수 있도록 보완지시를 해서 현재 살수차가 수시로 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쇄시설 크라샤라고 하는 분쇄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작동함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 라인을 살수호스로 연결해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도록 이렇게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조 하고 2차조는 투입구로 해서 살수호스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파시에는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 최대한 0.1초 사이로 다단발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

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시로 발파를 하는것은 아니고 월 2회 발파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대화산업~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2월 28일날 1차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초에 완료가 되는 대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李洙現 委員 : 그다음 대화산업개발 현재 도로 내지는 작업현장에서 비가오면 석분이 유출되가지고 대화천이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부분이 비오는 날이면 뿌연물이 흘러 내려와요. 이것을 하천감시원이 사실상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 석분가루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항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꼭 개선명령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劉燉文 委員 : 유돈문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각 사회단체 및 타기관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킴이 운동 평창군추진협의회 보조금 500만원, '96년 8월 8일날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96년 8월 29일날 교부를 20일만에 교부를 했는데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킴이 운동은 금년도부터 도정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5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그것은 군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어느 비목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사회개발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303-02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지금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킴이에서는 현재 24개 단체에서 참여인원은 3,2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금년에 처음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관광지과 비지정관광지 기타 우범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은 고발 5건, 과태료 2건을 부과를 해서 과태료는 152만 5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지난 3월 22일날 실시했고 자연보호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현지에서 자연보호를 실시한바 있고 매월 국토대

청결의날에 적극 앞장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劉燉文 委員 : 다음 송어장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평창군 송어장이 20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 12개가 미탄면에 있습니다.

송어장 오수처리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년이 가도 한번도 오수처리수거를 안합니다. 제가 40회 회의때 군정질문에 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인분처리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인분처리 용역업체에서 한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 劉燉文 委員 : 아니 제가 40회 군정질문에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많아서 이것은 인분처리하는 용역회사, 인분처리 차가 오수처리장에 잔뜩 모여 있잖아요. 빨아 올리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분처리용역회사에 줘서 수거를 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 劉燉文 委員 :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녁에 주민이 모를때에는 거기에 가득차 있어요. 가만히 면민이 다 잘때 개울에 쏟아붓고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뭘니까? 왜냐하면 그 송어양식장에서 인분처리수거차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적발이 되어가서 벌금을 내는것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탕먹는것은 누구 입니까? 그 지역의 면민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고쳐줘야지 왜 애매한 주민만 골탕을 먹습니까? 벌금을 내는것이 낫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 송어장하고 원수질려고 고발을 합니까? 그러면 전에도 제가 얘기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실적이 있어야지 없다고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시행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미탄면 양어장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입수하고 방수하고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식장은 오수정화 시설을 갖춘곳이 아니고 침전시설만 갖춰서,

○ 劉燾文 委員 : 지금 과장님 환경과장으로 오신지 한달 얼마 되어 잘모르시는데 송어장 밑에 가면 오수처리를 할수 있게 송어가 다 못먹잖아요. 그 찌꺼기를 넣어가지고 열리는것을 만들라고 주민이 아우성을 쳐서 송어장마다 지시를 해서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가 전부 내려가서 쌓여있어요.

그러면 위생처리차가 가서 퍼내야 하는데 한번도 안퍼낸 상태가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심이 있어서 제가 40회 군정질문 때 해서 답변을 받아냈어요. 시키겠다

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으니까 조사를 안해서 지시를 안한것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일단 가서 보시나마나 가득차 있어요. 그것을 수거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송어양식장 주인 얘기는 그것을 퍼내자면 몇백만원이 드는데 하루 사료가 몇십포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라앉아 다 썩잖아요. 냄새가 나는것을 그냥 주민이 갈때 개울에 들어부니까 이 개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퍼내자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겠다는 뜻이래요. 알아 들겠어요? 그러니 이런것을 면민들이 골탕먹게 하지말고 집행부에서 나가서 시키라는 이런 얘깁니다. 왜 안합니까?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놓고서, 과장님 꼭 실천하세요. 실천하시겠지요?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분뇨수거차로 수거를 하는것도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요를 할수 없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원래는 송어장에서 그

차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용역 회사에 줘서 퍼내면 된다니까요.

송어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서 실천을 하세요.

○ 李慶鎭 委員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허가를 낼 때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해야된다는 조항이 이라던가 그런것이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말씀하시는 사항이 오수정화시설 이런것이 아니고 양식장 침전지 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양식장 침전조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면적의 20%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큰곳은 규모에 따라서 법적인 처리할수 있는 용량이 따라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침전물을 수거해서 밭이나 논이나 아니면 어떤 계비시설로 쓴다거나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안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실수 없습니까?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답변이 될것 같은데요.

○ 劉燉文 委員 : 그것을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침전조에 가라앉은 것은 퍼가지고 농경지 퇴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의무화 되어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의무화 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씩, 한달에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런 규정도 있을텐데,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지금 말씀하신 분뇨차로 퍼내는 규정은 없고,

○ 劉燉文 委員 : 그것은 사람 인력으로 할수는 없고 그런것을 빨아올려서 해야

합니다. 차로 몇수십차 되는데 그런것으로 안하면 뭘로 합니까? 그 차가 분명히 송어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 자동차, 요즘에는 전부다 수세식 변소가 많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량기를 부착해가지고 우리가 재래식으로 눈금으로 보고 얼마주시오. 계량기를 부착해서 받을 수 없느냐고 했는데 이것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시설 피내는 양에 대한 l 를 계산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량시설은 이것은 다른것과 틀려서 찌꺼기가 많기때문에 계량시설을 경유해서 나갈수가 없답니다. 그런시설을 갖출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劉燾文 委員 :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만 계량기를 부착

해가지고 요즘 기름배달하는 차모양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뭘애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 재래식 변소를 피낼때는 안된다고 하지만 요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사람들 변명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런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고 제가 보기는 전부 평창군에 정화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금으로 보고 대충 몇 l 를 내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숫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정확치 않은것을 더 많이 내는가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지시해서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다시 설명드리는데 재래식 변소는 안되더라도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몇대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2대 있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제가 알기로는 3대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는 재래식 변소 치는것으로 두더라도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유도해 보세요.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대로 정화조라 하더라도 인분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빨아올라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랑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사람들의 답변입니다.

○ 劉燾文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은 우리 군에만 복지 시설이 없는데 도내에 거의 다 있습니다. 평창군만 없어요.

우리군에도 과장님 계획은 있습니까?
여름철에 미화원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샤워할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겨울같은 때는 대기시설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추운데 강변에 있을수도 없고, 그런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지금까지는 평창읍에 지하실을 개조해가지고 미화원 대기실로 쓰고 진부면에 구 숙직실을 개

조해서 쓰고 있고 다른면에는 미화원에 대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소각시설에 대한 복지시설을 갖출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燾文 委員 : 제 얘기는 소각시설 이런것 말고 미화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름철 같은때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일을 해야되고 이럴때에는 점심을 가지고 와서 더구나 미화원들이 넉넉치 못한 살림에 점심을 사먹을수도 없고 그렇다면 복지시설이란 대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샤워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냉장고도 있어서 모든 음식이 변질이 되지 않겠끔 이렇게 미화원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미화원들이 지금 보세요.

그 저저분한것, 가정에서 나오는것을 다른사람은 얼굴을 돌릴정도의 것을 다 처리를 하는 그런 고마운 분들인데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남의일 보듯 합니까?
이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챙겨서 그런 복지시설이 조기에 시설되도록 노력 하

세요.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관내 수계별 생태계에 대한 기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신규개발업체에 대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하는등 특단의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처리를 수계별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치 못했으나 '9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토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제가 이 내용과 똑같은 군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신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역시 확인해본 결과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용역비를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95년도에 지적하신 그런 수계별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산쪽에다만 요구를 하는것으로서 임무를 다하시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투쟁을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표시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쉬운것이 아닐겁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환경보호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를 시험해 볼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마 평창강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용역을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주민들 사이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문제를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별 쓰레기 증감 현황을 보면 7월달에 8t 에서 39t 을 증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8월달에 7t 에서 52t 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17t 에서 42t 으로 무려 25t 이 증가되었는데 이 자체가 갖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것은 8월달에 인근 영월을 보면 41t 에서 32t 으로 9t 이 감소되고 9월달에 영월에서 28t 에서 24t 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선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 8t 이 감소되고 8월달에 13t 이 감소되고 9월달이 3t 이 감소되었는데 유독 평창군만 25t 이 증가되는 쓰레기 증감 중 감량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도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면 평창군은 재활용

품 수거실적이 954t 입니다.

'96년 1월달부터 9월 30일까지, 인근 영월에는 2,333t 이고 정선군은 1,200t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부족한것 같은 그런생각을 하기에 충분한데 앞으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보호과와 관련되어 민원서류가 부적합 하다고 해가지고 반려한 내용, 취하, 불허한 내용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순민원 반려사유로 해서 손명순, 접수가 5월 30일날 되어서 6월 7일날 처리가 돼야 하는데 6월 7일날 부적합 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전영현, 9월 31일날 접수를 했는데 6월 8일이 처리기간인데 처리 하루전날 부적합 하다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반려보다는 오히려 보완을 시켜서 종결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반려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본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사실 저희군에는 8,9월 행락철에 영월이나 정선지역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관광지가 많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상당히 증가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월하고는 그런 계절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쓰레기 감량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시는 해왔습니다만, 특히 '97년도에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좋은 식단체 보급과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가 오대산과 보광, 쌍용 새곳이고 집단 급식소로 지정된 학교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는 집단 급식소가 16개소가 있고 음식 일반업체가 19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식품 위생업소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미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위생감사를 한다던가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11월 29일에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대형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고속 발효기를 설치를 해서 최대한 쓰레기를 감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감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나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관광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개 시군 중에서 25t 이 증가한것이 평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t 을 감량시켰습니다.

속초가 관광지역이 아닙니까? 44t 을 감량시켰습니다. 춘천도 90t 을 감량시켰습니다.

평창군이 제일 증가한 량이 25t 으로 제일 많습니다. 참고 하시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그다음 민원 서류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명순씨 불허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양축산에 저희직원이 현지방문 할때에 축사에서 폐수처리 될때 까지의 관로가 미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진공건조기라던가 전기시설이 미설치 되어가지고 준공검사를 할수 없는 실

정이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변영현씨는 5월 30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6월 7일 정화조 준공검사를 위해서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한 손명순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화조시설 준공인데 부적합 하다고 해서 반려 하는것 보다는 보완을 시켜서 처리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그냥 반려를 한것이 아니고 보완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그 이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나중에 이 시설로 인해서 사업을 안하신겁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현재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검사인데 축산시설을 다해놓고 폐수정화시설을 맨 나중에 하는데 정화시설 준공검사가 안났다고 해서 그 축산시설을 다 폐사 시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된 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기간 이후에 아직까지 미완료가 되어서 시설을 활용을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 李慶鎭 委員 :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신것 같은데, 아까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실적이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부족한데 수거실적이 부족한 이유와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 의지를 답변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재활용 량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타시군 하고 비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활용 할수 있는것은 열심히 수거를 해서 계속 제조공사에다가 처리할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 휴게소라던가 보광용평리조트, 이런 대형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1회활용 용기를 확보하고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쓰레기발생량은 평창군이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25t 으로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54t 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부족하다, 재활용품 수거할수 있는 대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4t 이나 감량

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34t 의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있다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여러가지 표시가 안나는 일이 많겠습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명예 감시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명예 감시관 위촉은 어떤사람으로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환경보전 명예감시관은 사실상 자연보호지도위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이런분들로 지역에서 자연보호에 관심이 많고 항상 지역의 자연보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으로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까지 총 56명이 위촉이 되어서 도에서 16명, 군에서 4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명예감시관 하고 명예지도관 하고 유사한것 같은데 활동범위는 어떻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 金斗經 委員 : 감시관은 56명인데 1인당 활동비가 연2회 10만원이 지출되어 활동하는 분들이고 지도관은 131명인데 활동비를 한푼도 안받고 활동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일원화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환경보전명예감시관 하고 지도관 하고 차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정 명예감시관 16명은 해병전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다시금 56명으로 정예요원으로 사실 편성을 해서 위촉을 해서 좀더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좀더 이런 자연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정예화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 金斗經 委員 : 알았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 입니다. 송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천은 대부분 군에서나 면에서나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상류에 대단위 축산 생활오수 때문에 송천이 오염 되었다 하고 사실 그렇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천에 대한 수질개선이러던가 수년간 대책을 마련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 개선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염이 아주 심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군에서 송천수질 현황이라고 나온것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해가지고 축산단지 방지시설 설치, 삼양축산이 10기, 한일농산 10기, 시험장 8기, 종축장 7기, 상지대학 1기 축산농가 1기, 이 삼양 한일서부터 10기 라는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제가 지금 기별로 표시된 장소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 金鍾永 委員 : 그런데 여기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도 기본적으로 없는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록이 된것이 전부 사실이건 같지 않고 허위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우선 들어오면 상지대학이 1기가 있는데 상지대학은 하나도 관리를 안합니다.

초지에 대해서 하나도 관리를 안하고 초지가 전부다 부실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삼양이라던가 한일이라던가 10기라는것은 여기서 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것이 시험장이라던가, 종축장은 어떻게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잠시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잠시후에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 할 것은 도암면 쓰레기장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5일날 오후 6시경에 화재가 나서 상당

히 화염에 휩싸이고 또 연기가 횡계시가지와 횡계2리 일대를 덮어서 자동차가 가다가 전부다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들이 신고를 수시로 많이 한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군으로 웬만한 기관으로 다 신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가서 진화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 또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도 가봤는데 사실 차가 못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오고가며 보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한가지가 고속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지금 다 보입니다. 거기에 항시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겠끔 어떤 막을 막아서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안보이도록 막을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예. 저도 불이나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삼부토전에서 흙이 30차 들어가 부어서 물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어제 진화를 다했습

니다. 차광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그것은 확실하게 차광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 禹康鎬 委員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보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이나 지도관이나 있는데 각 지역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군수 명의로 확충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지금 군에서 10월말에 여기는 56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에서 10월말에 추가로 8명을 더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추가로 군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교육을 시키고난 이후에 위촉을 해가지고 사실 광범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하천이던 산간계곡

이던 그런쪽으로 실시 간접규제 수단 보다는 직접규제 수단으로 그런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 禹康鎬 委員 : 다음 35쪽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월 24일날 실시했던 영동고속도로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제출서 8월 14일 의견제출한것 하고 주민설명회를 핏계, 진부이렇게 돌아오면서 했을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제출한 자료, 그다음 양양 동해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주민설명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11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의견제출이 되었다면 제출을 하고 설명회 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5, '96년 각종사업 입찰잔액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33쪽에 창리 농촌오수처리장 설치공사 하고 예산액, 입찰액,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시 콘

크리트 포장이라던가 하수차집관로 이런것을 공사를 하고 입찰잔액 사용하고 남은 다시 입찰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입찰잔액은 계획이 없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주위에 오수처리장 부근에 더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반납을 합니까? 불용액으로?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주변에 다른시설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환경보호과 국도비에 산배정액 착금액이 3억 7,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되는 부분이 3억 7,000만원정도 있는데 빨리 착금이 되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저희들이 도에 빨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劉燾文 委員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영동고속도로 건
설사업, 양양 ~ 동해간 송전선로건설사
업,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등 3개 다 환
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趙圭植 : 네.

○ 委員長 禹康鎬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
습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15分 監査繼續)

○ 委員長 禹康鎬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保健醫療院 所管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
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보건사업과장 손 동 흠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 委員長 禹康鎬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이상훈 위원 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관내에 일어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약 2개월정도 전부터 대화, 방립면 계촌 일부에서 건강식품을 빙자로 한 돌팔이 약장사들이 밤에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약 1개월전에 대화에서 건강식품을 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해가지고 적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다음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품하고 약하고 저희들이 건강식품은 위생계에서 취급을 하고 약품은 예방의약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소관이던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촌 지역에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相薰 委員 :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저녁에 밤을 이용해서 계촌같은 경우는 감자저장고를 세를 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특히 부녀자들, 플라스틱 제품이나 기타 싼 제품들을 부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서 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식품같은것도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또 약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과거부터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나 보건의료원이다 이런것을 떠나서 의당 이사람들이 관내에 와서 이런 상업행위를 할때는 의료원 과장으로서 현지출장을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가서 이것이 그러한 상인들이 판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텐데, 지금 20만원이다 6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먹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의 한계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계층 같은 경우는 약 2달이 넘었는데 한두번 정도는 출장을 나와서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법규나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보건의료원에서 출장 나왔다 하면 이사람들이 생각이 좀 다른데 계속해서 판매해도 관계가 없도록 계속 내버려 두니까 이사람들이 두달이 지나도 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오늘밤이라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수현 위원 입니다.

자료 17쪽을 보시면 공사 수의계약현황

다른것은 보니까 관내업체 같은데 보건 의료원 민원실 개보수는 원주에서 업자가 와서 한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네. 이것이 저희들이 관내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관내업자들은 이런 민원실을 산뜻하게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고르다 보니까 원주업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관내는 적당한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업체가 적당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앞으로 그런 과정은 기술적인 문제가 결여가 되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다음 자료 20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하고 보건지소 근무요

원 복무단속 실적 위반내용 근무상황부
미기재가 됩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공중보건의사
나 보건지소 직원들이 출타를 하거나 그
럴때는 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출타를 해
야 하는데 기재를 안하고 가서 복무단속
에 걸린겁니다.

2명인데 1명은 봉평지소에 근무하는 직
원이고 한사람은 도암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후 녹음불량으로 청취불능)

○ 李洙現 委員 : 분기에 한번씩 하신다
고요?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그것은 계획
이고요 수시로 하고 있고 요즘같은 경우
는 저희들이 자주하고 있는데 전국적으
로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공중보건의가 아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시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9시입니다.

○ 李洙現 委員 :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

인한 사실은 보통 10시가 넘어야 합니다
촌에서 이 보건지소 특히 아직도 우리
지역이 영세하다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 아침에 많이들 나오시는데 보
면 보통 10시가 넘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들어가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잡담하
고 있어요. 그럼 이 노인들이 의사가
나올때까지 보건의가 나올때까지 기다리
고 있어요. 보통 10시가 넘어야지 나
와서 그제서야 들어오세요, 그런 사항
이 전혀 개선이 안돼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고 뭐고 없어요. 복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근무시간에 나와서 돌아다
니고 사적인 일 다보고 다니시고 간호사
나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로요.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다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
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저희들이 공
중보건 의사나 보건지소 직원들을 수차
례에 걸쳐서 점검을하고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을 본다는것은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안되는데,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정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복무감독을 해서 오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복무단속 실적을 보며는 위반자 2명, 조치사항 주의,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혼자서 공중보건의들을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그렇지는 않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며는 이사람들이 공무원인지, 공중보건의인지, 일반사람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공중보건의나 간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정각 9시에 본의원이 분명히 지켜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죠?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예,

○ 李洙現 委員 :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로 이죠?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예,

○ 李洙現 委員 : 이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골 노인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이시간 이후에 특별히 단속을 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예, 알겠습니다.

○ 李洙現 委員 :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예, 지금 이수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사실상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제가 볼때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더 나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원장님이 계셨을때는 같은 의사기 때문에 원장님이 안계시면 그 뒤에 진료가 안되고 같이 얘기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더 잘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인근시군 보다는 의사들이 볼때는 보건사업과장이 너무하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위에서 여론이 기술자는 기술자가 관리를 해야하는데, 기술자를 행정직이 관리를 하니깐, 기술자 끈조같은 것이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의료원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원장님은 계속야 하기때문에 모실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부군수님이 도에 부군수 회의가 있을때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저도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때 가서 각시군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결과 금년에 강릉의료원의 외과 과장하고 교섭도 있었습니다. 최종단계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아서 안오게 되었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이라는 지역이 교통이 나쁘고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관계로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에 좋은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과장님 지난번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달라 하는 상당히 의원님들까지 코너에 모는 상당히 듣기에 산뜻하지 못한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국비 보조문제 때문에 군수가 내무부 방문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97년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서 국비보조 문제를 어떻게 섭외하겠다 하는 내무부 방문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그런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내무부 방문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역시 2년 3년동안 계속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우리 입장으로 봤을때는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노력하신 흔적을 볼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97년도에 어설프겠지만, 어떤방법으로 어떤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문서화 할수 있으면 해서 계획서를 하나 작성해서 계획대로 안되겠지만 추진할 수 있겠끔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 李慶鎭 委員 : 몇월달에는 어떻게 하고 대충 어떤식으로 해서 아는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한번 해본다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를 하셔서 문서화 해서

저희들은 추적해가지고 과연 얼마큼을 하셨는지를 확인할수 있겠끔 문서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네.

(서면답변은 끝에실음)

○ 金斗經 委員 : 김두경 위원 입니다.

노인 치매환자가 날로 급증한다고 보는데 군 관내의 환자치료 현황은 있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저희 관내에 시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 金斗經 委員 : 치매환자는 날로 늘어가고 하는데 치매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공간이 없는데 앞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없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것이 도의 치매환자가 어느정도인지 여러가지 따져봐야지만 진료과를 개설한다던가 대답을 할수가 있는데 몇분 때문에 진료과 개설을 해가지고 하는대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해가지고 만약 필요하다면 진료과를 세워야지요.

○ 金斗經 委員 :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대한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바뀌었습니다. 바뀔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공보의들 간담회때 자리에 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斗經 委員 : 마지막으로 약국이나 약방에서 무자격자로서 의약품판매행위의 구분이 어떤것입니까? 음료수를 팔아도

해당이 됩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약국은 약사가 판매하는 것이고 약방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곳인데 음료수 같은것은 약방에서는 다만 약 조제 같은것을 못하고 약국에서는 조제가 가능합니다.

○ 金斗經 委員 : 약방에는 드링크 정도는 판매가 가능하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慶鎭 委員 : 이경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각종 예방접종 예산 및 실시 현황 부분에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전염병관리 예방접종, 두가지를 종합해서 볼때 대체적으로 무료접종 부분이 목표대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무료접종은 노력을 하면 실적을 상당히 넘을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료접종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이것이 영유아 예방접종은 0세에서 6세까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이고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인데 무료접종이 떨어지는것이 영유아예방접종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 李慶鎮 委員 : 전체적으로 무료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수 있는데 그것이 인정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기가 부적정하게 되어 있어 엇그제 도에서 약을 수령해왔기 때문에 최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약을 생산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가 무료접종은 진도가 낮았습니다.

○ 李慶鎮 委員 :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의약품 구입예산 예산액 구입액, 지금 저희들이 돈을 2,000만원짜리 다리하나 놓는것도 예산확보 하기에 상당히 많은 투쟁을 하

는데 무려 불용액이 2억정도 되거든요. 진료약품, 검사시약, 위생재료, 예방접종백신 같은것은 무려 1억정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저희들이 진료약품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진료약품 7,500만원이 11월 12월 구입하면 내년도 2월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모자르는 형편 입니다.

검사시약은 수술을 안한 관계로 약간 남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 같은것은 저희들이 예산반영한것 하고 입찰보는것 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고 목표량이 약간 미달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 6,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李慶鎮 委員 : 예, 이 액수가 보통

심각한것이 아닙니다.

1억 6,000만원 정도가 보건의료원에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1억 6,000만원인데 전체 현황으로 보면 약품 구매현황을 보며는 '96년도에 평창군에서 3억 339만 원을 구입했고, 영월에서는 9,700만 원을 했습니다.

정선에서는 1억3,600만원, 그 폐기의약품 현황을 보며는 평창군에는 무려 18가지 약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한걸로 되어 있고, 정선군은 다섯가지, 화천은 한가지, 양구도 한가지 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약 살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산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정선, 영월을 비교하셨는데, 그런데 그지역은 내과 진료만 의사 한사람이 하고 저희들은 진료과가 병원기능으로 다섯개의 진료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 합니다.

○ 李慶鎭 議員 : 그런데 폐기의약품이

어떻게 평창군만 8종이고 다른곳은

1종씩 밖에 없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폐기약품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규정에 따라 금년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94년도에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계속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약품이 어떻게 폐기약품이 나오느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먼저 들어온 약품 목록을 의사들한테 공람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약품이 발생 안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 의사들이 바뀌고 이런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사항들을 폐기처분한 숫자를 파악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예.

○ 李慶鎭 委員 : 그렇다며는 지금 정선 다섯종이고, 화천, 양구는 한종인데, 평창군에는 8건이 폐기처분되어 종결이 되며는 내년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종에서 2종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가능하면은 폐기가 안되도록 전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李慶鎭 委員 : 타시군 하고 비교를 하면 타시군은 한두건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반드시 한건에서 두건정도 폐기처분이 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鍾永 委員 : 김종영 위원입니다. 환자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의료원은 종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에서도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은 저쪽 도암, 용평, 봉평을 볼때는 전혀 이용하는 실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진부쪽이나, 그쪽으로 진료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지금 의료원이 남부권에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사실상 진부, 도암 지역에서는 이용하기가 곤란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보건증을 하러 오는 분들이 고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오는 사람들이 평창, 미탄, 방림, 대화등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나 도암은 곤란합니다만은 용평 정도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진료가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보건증만이라도 거기서 하고 각종 검사 엑스레이 촬영도 할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委員 : 지금 저쪽에서 보며는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평창으로 오

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며는 강릉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료원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쪽 용평쪽에도 이용하기가 용이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알겠습니다.

○ 禹康鎬 委員 : 이경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폐기의약품이 18종이라고 하셨는데, 19종 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27원, 643원, 실지 단가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 保健事業課長 손동흠 : 총액이 111만 5천원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의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이런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委員長 禹康鎬 :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11월 27일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時55分 監査終了)

○ 出席委員

委員長 禹康鎬

幹事 金斗經

委員 李慶鎭

委員 劉燉文

委員 李相蕪

委員 李洙現

委員 金鍾永

○ 委員아닌 議員

議 長 金 樂 雲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朴 容 康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環 境 保 護 課 長 趙 圭 植

保 健 事 業 課 長 孫 東 欽

○ 議會事務課

專 門 委 員 辛 教 善

議 事 係 長 全 完 鐸

地 方 行 政 西 紀 鄭 成 文

【 議 席 】

○ 議席表 (4 面에 실음)

질의 · 답변서

질 의	이 상 훈 위 원	답 변	평 창 군 수(지적과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제출</p>			

〈답 변〉

- 별 첨 -

부동산 중개수수료

종 별	거 래 가 액	수 수 료 요 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백만원 미만	1만분의 90 이내	35,000원 이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만분의 70이내	60,000원 이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만분의 60 이내	150,000원 이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만분의 50 이내	200,000원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분의 40 이내	300,000원 이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만분의 30 이내	5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만분의 25 이내	800,000원 이내
	4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만분의 20 이내	1,200,000원 이내
	8억원 이상	1만분의 15 이내	3,000,000원 이내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등	1백만원 미만	1만분의 80 이내	7,000원 이내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만분의 70 이내	30,000원 이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만분의 60 이내	50,000원 이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만분의 50 이내	120,000원 이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만분의 40 이내	150,000원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분의 30 이내	250,000원 이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만분의 25 이내	400,000원 이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만분의 20 이내	600,000원 이내
	4억원 이상	1만분의 15 이내	1,500,000원 이내

※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

질의 · 답변서

질의	우 강 호 위 원	답 변	평 창 군 수(지적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97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계획</p>			

〈답 변〉

- 별 첨 -

'97년도 부과대상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시 행 자	비 고
스키장 (2)	· 용평스키장(발왕산) · 한국콘도간이스키장	도암면 용산리 "	(주)쌍용 (주)아시이나개발	
골프장 (1)	· 보광골프장	봉평면 면은리	(주)보광	
콘도 (2)	· 보광콘도 · 한국콘도	봉평면 면은리 도암면 용산리	(주)보광 (주)아시이나개발	
호텔 (2)	· 오대산관광호텔 · 호텔식 오피스텔	진부면 간평리 봉평면 면은리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5 김홍남 충북 제천시 신백동 147 김창선	
아파트 (2)	· 황용아파트 · 동보아파트	용평면 장평리 도암면 횡계리	(주)황용 (주)동보건설	
근린생활 시설 (4)	· 숙박업 · 여관·목욕탕 · 근린생활	봉평면 면은리 진부면 하진부리 도암면 횡계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구APT 101동 802호 정명채 진부면 하진부리 김등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박광자	
공장 (1)	· 생수공장	용평면 이목정리	(주)동원산업	
기타 (15)	· 농산물판매장부지조성 · 전원주택부지조성 · 오피스텔부지조성	진부면 간평리 용평면 백옥포리 봉평면 면은리	진부면 간평리 이규욱 용평면 백옥포리 백찬수 봉평면 무이리 김길선	

'97년도 부과대상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시 행 자	비 고
	· 전원주택부지조성	용평면 재산리	서울 서초구 염곡동 162-7 조우현	
	· 전원주택부지조성	봉평면 면은리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김기현	
	· 농산물판매장부지조성	도암면 용산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김 대 환	
	· 창고 및 공장부지	용평면 재산리	용평면 재산리 (주)대성 양영남	
	· 전원주택부지조성	진부면 두일리	진부면 하진부리 이 명 진	
	· 운수시설 및 주택	대화면 대화리	대화면 대화리 이근형	
	· 숙박시설	봉평면 창동리	서울 강남구 도곡동963 강수환	
	· 주유소 및 간이휴게소	봉평면 무이리	봉평면 창동리 김창하	
	· 주택 및 근생	봉평면 면은리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이종선	
	· 숙박업(모텔)	진부면 상진부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A 102-802 김 은 수	
	· 자동차운전학원부지 조성	진부면 간평리	도암면 횡계리 김 동 윤	
	· 주택부지조성	용평면 재산리	용평면 재산리 김 금 숙	

○ 개발비용신고서 재산정 현황

사 업 명	위 치	시 행 자	신고업체	재산정업체	기 타
음료 공장 부지조성사업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주) 해태음료 김 현 곤	한양경제 연구원	한국산업 연구소	'97. 1. 1 기 준공시지가정 산부과대상
농산물가공 공장부지조성 사업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평창 도암면 유천리 정형옥	한국산업 연구 소	한국경제 조사연구원	"
자동차정비 공장부지조성 사업	평창군 평창읍 상리	평창군 평창읍 상리 임재호	한국산업 관계연구 원	한국산업 연구 소	"

○ 재산정 사유

-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25일이내에 개발비용을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자 대부분이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로 개발비용원가계산 용역업체를 통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한 개발비용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재확인 할 필요성이 판단된다고 할시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재의뢰하여 확인을 받은후 부과하고 있음.

○ 개발비용 산정현황

사업명	신 고 업 체		재 산 정 업 체		재산정용역 수 수 료
	기 관	금 액	기 관	금 액	
음료공장 부지조성 사업	한양경제 연구원	계 - 758,960,248 순공사비 : 629,691,471 조사설계비 : 42,533,846 일반관리비 : 34,633,031 기타경비 : 52,101,900	한국산업 연구소	계 - 708,478,002 순공사비 : 595,096,747 조사설계비 : 30,951,874 일반관리비 : 32,730,321 기타경비 : 49,699,060	2,000,000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조성 사업	한국산업 연구소	계 - 86,885,852 순공사비 : 63,967,061 조사설계비 : 5,431,187 일반관리비 : 3,838,024 기타경비 : 13,649,580	한국경제 조사 연구원	계 - 79,576,000 순공사비 : 58,635,793 조사설계비 : 3,772,744 일반관리비 : 3,518,147 기타경비 : 13,649,580	2,000,000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조성 사업	한국산업 계 연구원	계 - 81,128,552 순공사비 : 62,147,430 조사설계비 : 5,283,277 일반관리비 : 3,728,845 기타경비 : 9,969,000	한국산업 연구소	계 - 80,930,212 순공사비 : 61,968,455 조사설계비 : 5,274,630 일반관리비 : 3,718,107 기타경비 : 9,969,020	2,000,000

질의 · 답변서

질의	이수현 위원	답변	평창군수(복지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장평노인복지회관 완공후 추가소요예산 파악 자료 제출</p>			

〈답 변〉

- 별 첨 -

노인복지회관 건립후 소요예산

□ 운영-관리비 (매년 소요되는 예산)

(단위: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기 초	비고
계		21,648,960		
인건비	2 명 (관리인 1 명 봉사원 1 명)	14,328,960	○보수 $17,560 \text{원} \times 300 \text{일} \times 2 \text{명} = 10,536,000 \text{원}$ ○상여금 $5,268,000 \times 4/12 \times 2 \text{명} = 3,512,000 \text{원}$ ○유급휴가수당 $17,560 \times 8 \text{일} \times 2 \text{명} = 280,960 \text{원}$	
공공요금 사용료	유 류 비	3,500,000	○등유 $350 \text{원} \times 2000 \text{ℓ} \times 5 \text{월} = 3,500,000 \text{원}$	
	전 기 료	480,000	○ $40,000 \text{원} \times 12 \text{월} = 480,000 \text{원}$	
	수 도 료	240,000	○ $20,000 \text{원} \times 12 \text{월} = 240,000 \text{원}$	
	전 화 료	480,000	○ $40,000 \text{원} \times 12 \text{월} = 480,000 \text{원}$	
검 사 료	전기안전검사	120,000	○ $60,000 \text{원} \times 2 \text{회} = 120,000 \text{원}$	
	소방안전검사	100,000	○ $50,000 \text{원} \times 2 \text{회} = 100,000 \text{원}$	
건물유지	건물유지비	0	○98년이후 소요	
운영비	소모품구입 기타	2,400,000	○ $200,000 \text{원} \times 12 \text{월} = 1,200,000 \text{원}$ (비누, 세제, 청소도구, 사무용품, 기타)	

□ 집가-비품 구입비 (97년 10월 소요)

(단위: 원)

시설명	집기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계				43,780,000	
관리실	소계			1,400,000	
	옷장	1개	300,000	300,000	
	침구류	1식	500,000	500,000	
	T V	1개	500,000	500,000	
	전화	1개	100,000	100,000	
사무실	소계			5,450,000	
	책상세트	2개	200,000	400,000	
	케비넷	3개	150,000	450,000	
	복사기	1개	4,000,000	4,000,000	
	전화	1개	100,000	100,000	
	소파세트	1조	500,000	500,000	
휴식실	소계			5,000,000	
	자판기	1개	3,000,000	3,000,000	
	응접세트	1조	2,000,000	2,000,000	
물리치료 체력단련	소계			12,880,000	
	헬스자전거	1조	400,000	400,000	
	런닝머신	1조	300,000	300,000	
	벨트맞사지	1조	250,000	250,000	
	안마의자	1조	500,000	500,000	
	핫팩통	1조	450,000	450,000	
	파라린욕	1조	300,000	300,000	
	치료용침대	4조	120,000	480,000	
	QUJC TENS	1개	1,500,000	1,500,000	
	I,C,T	1개	6,000,000	6,000,000	

시설명	집기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초음파	1조	2,500,000	2,500,000	
	적외선치료	1조	200,000	200,000	
샤워실	소계			1,400,000	
	옷장	2조	500,000	1,000,000	
	체중계	2개	200,000	400,000	
세탁실	소계			1,000,000	
	드럼세탁기	1조	1,000,000	1,000,000	
주방	소계			2,350,000	
	싱크대	2조	600,000	1,200,000	
	가스렌지	1개	150,000	150,000	
	그릇류	1식	1,000,000	1,000,000	
노래방	소계			1,600,000	
	노래방	1조	1,000,000	1,000,000	
	T V	1개	500,000	500,000	
	장기바둑	10 조	10,000	100,000	
이미용실	소계			4,400,000	
	화장대	2조	400,000	800,000	
	의자	3조	200,000	600,000	
	미용기구	1조	-	3,000,000	
회의실	소계			7,300,000	
	의자	100개	60,000	6,000,000	
	발언대	2개	250,000	500,000	
	탁자	2개	100,000	200,000	
	쇼파	4개	150,000	600,000	
기타	청소도구 등			1,000,000	

질의 · 답변서

질의	이수현 위원	답변	평창군수(환경보호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대화산업개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점검결과 및 개선명령 사항 관련 자료 제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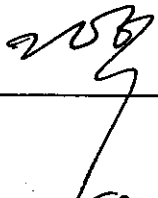


〈답 변〉

- 별첨 -

"한사람이 버린폐수 수만명의 생명위협"
평 장 군

우 232 - 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 (0374) 30 - 2332 / 전송 33-6356

문서번호 환경 67221 - 1083
 시행일자 1995. 8. 16.
 발음 진부면 하진부리 77-13
 (주)오대개발 이영립

취급	구분	군 수
보존	5년	205 
부군수		
과 장	전 결	 환경지도개발  협조
기안	조 영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수리

평창민원 제3198호('95. 8. 14)로 접수된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대기 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니 사업장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역

사업장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기 간		규 모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 오대 개발	황우장	이영립	진부면 하진부리 산478외 5필지	'93. 12. 16 ~ '95. 1. 30	'95. 2. 11 ~ '97. 12. 31	생산량 : 400,000㎡ 면 적 : 54,357㎡	생산량 : 1325,640㎡ 면 적 : 54,357㎡	

첨임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1부



평 장 군 수

신고번호	비 산 먼 지 발생 사업 신고 필 증		
95- 38			
상호(사업장명칭)	(주) 오대개발		
성명(대표자)	이 영 린	주민등록 번호	480523 - 1051912
사업장소재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478외 5필지 (전화번호 35 - 6400 ~ 2)		
사업기간(공사기간)	1995 년 2 월 11 일부터 1997 년 12 월 31 일 까지		
신 고 사 항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금속물질채취, 제조, 가공업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	생산량 : 1, 325, 640m ³ 면 적 : 54, 357m ²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 출 공 정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별	첨 -	
<p>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비산먼지발생사업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p> <p>1995 년 8 월 16 일</p> <p>평 창 군 평 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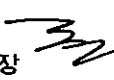

" 별첨 "

	배출공정	주요역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신	이 승	분쇄시설 (양수기 1HP x 1, 파이프 3cm x 90cm,
		호스 2.5cm x 20m)
고	이 승	분쇄시설 (양수기 1HP x 1, 호스 2cm x 30m x 1,
		파이프 1.5cm x 1m x 1, 샤워기 1.5cm x 1)
사	이 승	콘베어덮개 (3m x 3m x 1, 3m x 2.5m x 1, 9m x 2m x 1
		12.3m x 3m x 1, 12m x 3m x 1)
항	이 승	콘베어벨트살수시설 (호스 1.9cm x 30cm x 1,
		살수식파이프 3cm x 90cm x 1)
	수 승	세륜시설 (4m x 15m x 1), 살수차 (1,000ℓ x 1)
		측면살수시설 (양수기 1HP x 1)
	야 적	방진덮개 (6m x 25m x 15장)
	야 적	양수기 1HP x 1 ——스프링롤러
	재 광 · 재 취	젖은 가마니 30장
	신기 및 내리기	살수시설 (양수기 1HP x 1) ——스프링롤러
	이	하 빈 칸

우 232 - 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 (0374) 30 - 2332 / 담당 장석구

문서번호 환경 67221 - 131P
 시행일자 1996. 11. 5.

받음 대화산업개발
 이 명 우

취급		군 수
보존	년	2.
부군수		
과 장	전 결	환경지도계장 
기안	장 석 	

제목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절차

1. 귀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화산업개발(주)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가공업으로 96.3.7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차례의 발파와 분쇄시설로 인한 먼지 발생으로 인근주민들이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2. 대표자(관리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수사확인, 점검하여 인근주민에게 발파소음·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비산먼지역제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통보하니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엄격한 비산먼지역제시설 설치기준

- 야적물질은 야적덮개로 덮을 것. (2m x 10m x 53 (설치))
-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 ~ 10% 유지하도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 (구)의리(9, 12, 13, 14)
- 작업장구간내 살수차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도로인접구간내 양생포설치)을 이용하여 상시살수(10회/일)할 것 (산곡리 상시용탱)
- 분쇄시설(크랫샤) 작동으로 인한 먼지저감을 위해 전 line을 살수호스로 연결하여 먼지발생을 완전히 억제할 것. (산곡리 13호 (CRZ구간 내)에 설치)
- 발파시 인근주민에게 사전통보하고 최대한 다단발파로 발파소음을 저감할 것. 끝.

질의 · 답변서

질 의	김 두 경 위 원	답 변	평 창 군 수(복지과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관내 병·의원 의료비 미지급 현황 제출</p>			

〈답 변 〉

관내 병·의원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진 료 기 관	청 구 액	지 급 액	미 지 급 액			비 고
			계	'95	'96	
계	89,830,490	15,844,190	73,986,300	-	73,986,300	
평창 김 의 원	23,777,590	6,326,560	17,451,030	-	17,451,030	
평창 연세의원	6,300,510	-	6,300,510	-	6,300,510	
대화 세광의원	15,972,260	3,605,540	12,366,720	-	12,366,720	
대화 삼양의원	6,413,090	2,121,550	4,291,540	-	4,291,540	
봉평 광제의원	8,576,400	3,013,900	5,562,500	-	5,562,500	
진부 서울연합의원	3,331,780	776,640	2,555,140	-	2,555,140	
진부 연세의원	25,458,860	-	25,458,860	-	25,458,860	
도암 유성의원	-	-	-	-	-	

질의 · 답변서

질의	우 강 호 위원	답 변	평 창 군 수(복지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의 모금일정별 내역 및 모금방법은?</p>			

〈답 변〉

○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

-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은 매년 강원도의 이웃돕기운동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자체추진계획을 수립 모금 하였으며,
- '96. 7월 이후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및 내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모금 할 수 있으나 '96 하반기에 허가를 득하거나 모금한 실적은 없습니다.
-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은 강제적, 준조세적 성격의 모금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모금참여 방식으로 모금하였으며,
- 일반인, 상공인, 언론인등 각계를 모금대상으로 참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 '96년도 모금기간인 '96. 1.31의 성금을 기탁한 내역은 붙임과 같이 총 9건에 18,313,000원 입니다.

'96.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실적

(모금기간외)

(단위 : 원)

일 시	주 소 및 기 관, 상 호	성 명	금 액	비고
계		9 건	18,313,000	
96. 2. 7	(주) 팔봉스키 리조트	서석규외 임직원일동	2,000,000	
96. 2.16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주)동원산업	대표이사 오 동 빈	1,000,000	
96. 2.21	(주) 쌍용양회공업 용평사업본부 본부장	이 태 선	2,000,000	
96. 2.27	봉평면 진조리 139 (주) 해태음료	김 현 곤	2,000,000	
96. 3. 6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주) 동원산업	대표이사 오 동 빈	5,000,000	
96. 3. 9	평창군 평창읍 하5리 (주) 유성종합건설	김 건 하	3,000,000	
96. 4.12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	주지 김 창 석	613,000	
96. 4.30	(주) 도우엔지니어즈	오 장 환	300,000	
96. 5.11	(주)쌍용양회공업 용평사업본부 본부장	이 태 선	2,400,000	

질의 · 답변서

질 의	우 강 호 위 원	답 변	평 창 군 수(복지과장)
회 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 취업 현황 제출</p>			

〈답 변〉

연번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등급	직 업
1	이 병 한	평창읍 대하리 2반	630227-1330538	지체 5급	운 전
2	마 성 일	" 하1리	461208-1330513	지체 2급	부동산업
3	김 용 기	" 주진리 400	670214-1330511	지체 3급	공무원
4	심 승 로	" 중리 294	301017-1330511	지체 3급	복지관장
5	안 효 인	" 여만리 317	600103-1329220	지체 5급	농공단지
6	김 형 기	" 약수리 69	700329-1330516	지체 4급	운 전
7	이 종 석	" 중리 328	580518-1051711	지체 5급	운 전
8	유 택 종	" 약수리 299	650821-1330512	지체 6급	운 전
9	이 영 자	" 주진2리	540827-2330523	지체 2급	농공단지
10	윤 숙 자	" 중리 백오AP	520423-2330511	지체 5급	보험사원
11	권 형	미탄면 창3리	460917-1332729	지체 6급	환경미화원
12	최 이 용	" 회동리	580710-1330619	지체 6급	태영석회
13	유 북 남	" 창1리	510712-1330615	지체 2급	미탄일용직
14	이 만 진	방림면 계촌6리	760805-1330412	지체 3급	인쇄소
15	방 순 열	대화면 대화1리	600215-2155419	지체 3급	미방약국
16	이 연 식	" 대화2리	590621-1330918	지체 3급	환경미화원
17	김 복 기	봉평면 창동1리	291022-1331011	지체 2급	구세약방
18	봉 준 행	진부면 송정3리	480804-1023614	지체 2급	출판사
19	송 영 백	도암면 황계12리	550930-1343511	지체 4급	평창전화국
20	최 경 아	평창읍 중1리	670119-2330516	지체부자유	공무원
21	홍 영 표	방림면 방림리 1274	391229-1330712	"	공무원

질의 · 답변서

질의	이수현 위원	답변	평창군수(축산과장)
회의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감사특위 ('96. 11. 27)		
<p>〈질의요지〉</p> <p style="margin-left: 40px;">- 대화양돈단지 조상사업에 대하여 '96. 10. 11이후 "환경성 영향평가" 일건 서류 제출</p>			

〈답 변〉

- 별 첨 -

평 장 군

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전화 (0374) 30-2011/30-2491/담당 심재호

문서번호 건설 58214 - 1633

시행일자 1996. 9. 11.

받음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참조

휘 금		군 수	
보 존	년		
부 군 수			
과 장	신성		
기 안	심 재	건설행정계장 신성	협조

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 협의

우리군 대화면 대화리 601번지 일원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 합니다.

1. 건 명 : 양돈단지 조성
2.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1번지 일원
3. 변경(안)내용

준농림지역 A = 0.067ha —————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A = 0.067ha

4. 변경사유

현대식 축산설비를 갖추어 양축농가의 육성발전 및 정부의 축산지원금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분뇨의 일괄처리(전원퇴비화)로 주변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설장비의 자동화로 지역주민소득 및 인력난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함.

5. 세부토지이용계획 : 불임 참조

불임 환경성 검토서 3부. 같.



평 장 군 수

의 건 서

1. 건 명 : 양돈단지 조성

2. 위 치 : 강원도 평장군 대화면 대화리 601번지 일원

3. 면 적 : 66,421 m² (약 20,092평)

4. 용도지역

- 준농림지역 A = 0.067km² —————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A = 0.067km²

5. 근거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 제7조4항

- 입안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5호

6. 관련부문별 의견

가. 토지수급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에 적합

나. 도건설종합계획

- 가축분뇨의 전원퇴비화로 환경 및 하천오염 방지

- 재래식 가축사육에서 집단적 가축사육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집단적 가축사육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다. 농지보존

-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포함 여부 : 해당없음

-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편입여부 : 해당없음

- 군사시설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산림보전 : 해당없음

- 환경보전 : 환경오염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별첨"

- 문화재보호 및 매장지역 : 해당없음

- 자연환경보전지역 : 해당없음

구분	위수(대화리)	지번	종류	면적(m ²)	면적(m ²)	상지보급	면적(m ²)
1	대화면 대화리	601	전	21,207	21,207	관아림	21,207
2	대화면 대화리	601-1	전	2,479	2,479	관아림	2,479
3	대화면 대화리	603	전 도	3,580	3,580	관아림	3,580
4	대화면 대화리	605	전	2,625	2,625	관아림	2,625
5	대화면 대화리	604	전	4,393	4,393	관아림	4,393
6	대화면 대화리	602	전	2,129	2,129	관아림	2,129
7	대화면 대화리	598	전	3,332	3,332	관아림	3,332
8	대화면 대화리	599	전	15,478	15,478	관아림	15,478
9	대화면 대화리	594-9	전	724	724	관아림	724
11	대화면 대화리	600	전	1,828	1,828	관아림	1,828
12	대화면 대화리	600-1	전	1,759	1,759	관아림	1,759
13	대화면 대화리	594-8	임	11,187	11,187	관보전	11,187
계				70,721	66,421		66,421

7. 종합의견

○ 본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축산기반시설 확충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
 양분 발전을 도모하고, 규모의 전업화 및 시설의 현대화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영세 양돈시설(양돈)을 집단화, 협업화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공동설치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5년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2,986,100천원을

부지이용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안

- 본신청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으로써 부지의 총면적이 30,000㎡가 초과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사항이므로 국토이용계획을 사업시행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 또한 본 신청지는 국도31호선에서 약3km 떨어진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신청지를 중심으로 약2.5km 반경내에는 경작자(농가)가 없고 산간오지의 경사진 농지로서 농지의 출입 및 통작, 농업기계화가 어려운 적박한 농지이므로 보전의 가치가 없고 향후에도 농지로서 이용가능이 희박한 상태임.
- 본 사업은 축산폐수로 인하여 다소의 민원발생은 예상되나 인근주택과는 약2.5km 격리된 지역으로써 사업계획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농촌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사료되며,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우리군(축산과)에서 주민설명회, 유사시설 견학등을 실시하였습.
- 21세기 세계화에 걸맞는 국제경쟁력 제고, 자연환경의 보전, 주민환경의 개선등을 위하여는 재래식 가축사육을 지양하고 집단화된 단지를 조성, 최신설비를 갖추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촌소득증대에도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협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96.

평창군



농자

“ 녹색 환경의 나라 건설(환경대통령선언 후속조치) ”

원 주 지 방 환 경 관 리 청

우 220-041 원주시 명륜1동 242-2 / 전화 (0371)764-0983 / 전송 765-0003 담당 이호연

문서번호 계획 67120 - 1105

시행일자 1996. 10. 7.

받음 평창군수

참조

선 결	과장	오승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6. 10 08	결	
	번호	4188	재 공	
	처리과		람	
	담당자			계장 대장

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통보

1. 건설 58214 - 1633('96. 9. 1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군에서 협의요청한 대화면 대화리 601번지 일원의 한우리 양돈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된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등 환경성검토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본건 검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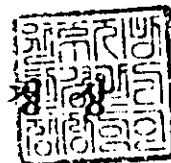
가. 발생오수의 수용하천에 대한 환경영향 미검토.

나. 악취발생대책 미비.√

다. 기타, 타법저촉여부 검토, 보고서 작성의 미흡 등.

3. 참고로, 본건과 같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나 “행정계획 및 사업의환경성검토” 등 사전협의시에는 우리청 계획 67120 - 1131('95. 11. 9.)호로 이미 통보한 바 있는 “환경영향검토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이 적절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원 주 지 방 환 경 관 리 청



"천혜자원 우리평창 한갓가꿀 미래의 땅"

평 창 군

우232-800/평창 평창 하리 210 /전화 (0374) 32-2011/전송33-6356 담당 민선기(491)

문서번호 건설 58214 - 1949

시행일자 1996. 10. 29.

반응 원주시 명륜 1동 242-2

참조 원주시방 환경관리청장

취급		군 수
보존	년	홍기민
부군수		
과 장	진 길	건설행정개장 서영
기안	민선기	

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안) 검토의견 증보에 따른 재협의통보

1. 계획 671200-1105(96.10. 7)호에의거 대화면 대화리 601번지 일원의 한우리 양돈 단지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이 증보됨에 따라
2. 붙임과 같이 보완 제출 재협의코저 하오니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검토 보고서 1부. 끝.

평 창 군 수

“ 녹색 환경의 나라 건설(환경대통령선언 후속조치)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우 220-041 원주시 명륜1동 242-2 / 전화 (0371)764-0983 / 전송 765-0003 담당 전차현

문서번호 계획 67120 - 1247

시행일자 1996. 11. 19.

받음 평창군수

참조

선결	과장	안원석	지시	
접수	일자	1996. 11. 20	결	
	시간			
	번호	4179	재·공	
	처리과			
	담당자		함	계장 

제목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협의 회신

1. 건설 58181 - 1949('96. 10. 29.)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군에서 협의요청한 대화면 대화리 601번지 일원의 한우리 양돈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청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가. 부지조성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질·성토량을 유지하되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하천 오염, 수서생태계 파괴 등 수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수구역별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 설치, 구간별 또는 단계적 시공 등의 철저한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나. 우기시 축산폐수의 유출로 하류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축사·저장조 등의 경계에 완벽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다. 사업지구 발생오수로 인한 하류하천오염 최소화방안을 별도로 강구·시행하고 축산폐수 저장조 및 발효건조장 공사시에는 축산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전량이 발효·건조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 라.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함에 있어서 축사, 처리시설등으로부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마. 상기 제시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환경부고시 제88-21호)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함.

바. 사업지구내 용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반침하, 지하수오염 여부 등 지하수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사. 기타 환경영향검토보고서에 제시된 환경오염저감방안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및 이용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등으로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

원 주 지 방 환 경 관 리

